

고용보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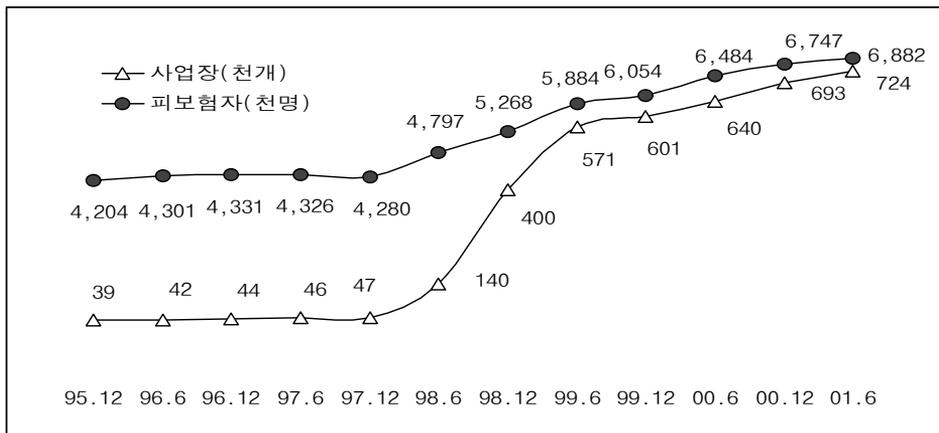
I. 고용보험 적용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2001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수는 724천개이며, 피보험자수는

6,882천명이다. 같은 시점의 전체 취업자수가 21,748천명이고, 임금근로자수는 13,542천명¹⁾이며 이들 중 적용대상 근로자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9,676천명²⁾이다. 그러므로 전체 취업자의 31.6%, 임금근로자의 50.8%

(그림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추이(1995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자료: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1) 통계청, 『2001년 6월 고용동향』.

2) 이 수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행정자치부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수, 피보험자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직 등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거나 피보험자관리가 되지 않는 근로자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엄밀하게 도출된 수치는 아니다. 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적용대상근로자}) = (\text{임금근로자}) - (\text{업종대분류상에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 (\text{공무원}) - (\text{사학연금 피보험자}) - (\text{1월 미만 일용근로자}) - (\text{65세 이상인 자}) - (\text{1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 (\text{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

따라서 별정우체국 근로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은 통제하지 못한 수치이다. 지난 호까지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를 통제하지 못했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들도 제외되었다. 지난 호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9,690천명이고, 약 71.0%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약 71.1%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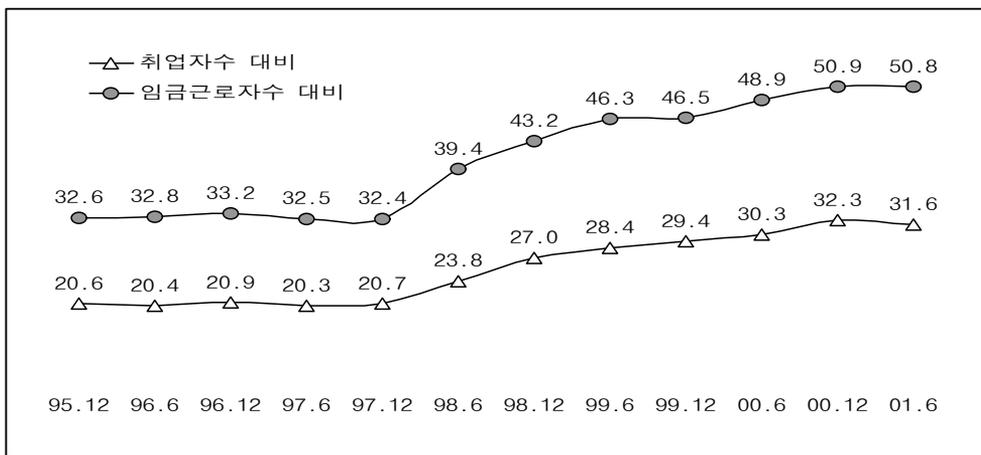
[그림 2]는 취업자수 및 임금근로자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피보험자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를 취업자수 및 임금근로자수와 대비하여 보면 적용률이 2000년 하반기에 비해 근소하기는 하나 다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1995년 7월 이후 처음 나타난 것이다. 적용대상 근로자수 추정치 대비 피보험자수의 비중을 보아도 전반기의 71.2%에 비해 71.0%로 약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반드시 보

호하겠다고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보아도 여전히 30%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적용률 하락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고용보험 관리체계의 개선,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독려 등 행정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표 1〉에서 2001년 상반기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의 변동내역을 살펴 보면 전년동기인 2000년 상반기 639천개와 6,484천명에 비해 사업장수는 13.2%, 피보험자수는 6.1% 증가하였다. 또한 전반기인 2000년 하반기와 비교해 보면 사업장수는 4.4%, 피보험자수는 2.0% 증가하였다.

[그림 2]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 비중 추이(1995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자료: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표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변동내역(1997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개, 명, %)

		1997	1997	1998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년대비 증감률
사업장	기간말 현재 (전기대비증감률)	46,300 (2.4)	47,427 (2.4)	140,200 (195.6)	400,000 (185.3)	570,748 (42.7)	601,394 (5.4)	639,493 (6.3)	693,414 (8.4)	724,169 (4.4)	13.2
	성립	5,138	3,789	96,577	257,820	187,041	53,555	90,228	95,803	81,022	-
	소멸	2,530	2,675	3,247	5,429	12,619	21,335	52,401	42,296	50,823	-
	기간내 순증감	2,608	1,114	93,330	252,328	174,422	30,646	38,099	53,921	30,755	-
피보험자	기간말 현재 (전기대비증감률)	4,325,940 (-0.1)	4,280,430 (-1.1)	4,796,775 (12.1)	5,267,658 (9.8)	5,844,018 (10.9)	6,054,479 (3.6)	6,483,649 (7.1)	6,747,263 (4.1)	6,882,165 (2.0)	11.4
	취득	726,204	619,027	1,541,241	1,445,412	1,773,275	1,557,078	1,933,049	1,762,674	1,744,229	-
	상실	730,915	661,627	1,016,431	967,257	1,176,637	1,553,194	1,492,996	1,488,562	1,581,751	-
	기간내 순증감	-4,711	-42,600	524,810	478,155	596,638	210,461	429,170	263,614	134,902	-

주 : 실업급여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이 1997년 말까지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199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동년 10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남.

자료 :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³⁾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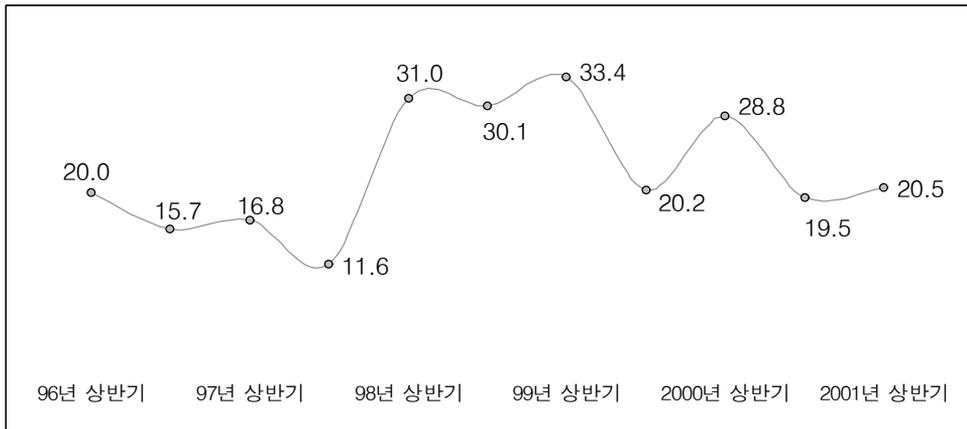
1996년 상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의 취득률을 보면 [그림 3]과 같이 대략 1996년 20.0%에서 출발하여 1997년 하반기에 11.6%까지 떨어졌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된 1998년 상반기에 31.0%로 치솟고, 1998년 하반기에 1인 이상 전규모로

확대된 영향과 경기상승의 여파로 1999년 상반기 33.4%의 가장 높은 취득률을 보였다. 이러한 취득률은 1999년 하반기에 20.2%로 떨어졌다가 2000년 상반기에 다시 상승하였으나 2001년에 들어서면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고용변동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규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표 1과 표 5 참조).

3) 2001년 1~6월 사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된 총 1,736,575명 중 실제로 1~6월 사이의 취득자 1,386,1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용보험통계월보』상의 취득자수와의 차이는 『고용보험통계월보』의 수치가 취득신고를 받아 행정적으로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실제 취득일로부터 14일 내 신고),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취득신고의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적용확대 시기에 이미 적용대상이었으나 늦게 신고한 경우 등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률 추이(1996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



주 : 1) 취득률=(해당기간 취득자수÷전기말 피보험자수)×100.

2) 본 자료는 행정상의 취득처리일이 아닌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2001년 상반기 취득률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표 2 참조) 2001년 상반기에 취득률이 가장 높은 사업장 규모는 5~9인이며,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취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1년 상반기 평균 취득률인 20.2%⁴⁾를 기준으로 볼 때,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장은 평균 미만의 취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하반기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의 취득률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에서 2000년 하반기의 취득률보다 약간 증가하였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더라도 취업곤란과 고용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취득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특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분석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1년 상반기 동안 고용보험 취득을 신고하여 행정적으로 처리된 취득자 총 1,736,575명 중 실제 취득일(대부분 근로자가 직장에 취업한 후 근로개시일)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4) 취득률의 전체 평균이 [그림 3]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데이터 값의 누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2〉 업종 및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률 분포(2001년 상반기)

(단위 : %)

	전 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건설공사
전 체	20.2	21.8	29.8	26.5	22.5	17.8	13.9	12.8	8.6	55.6
농수림어업	27.9	22.9	27.3	31.4	26.6	26.4	31.1	70.7	0.0	0.0
광업	14.1	31.2	27.5	24.4	10.3	5.3	1.8	3.2	5.9	0.0
제조업	16.6	19.8	26.5	25.2	21.3	14.8	11.0	8.1	6.1	83.3
전기·가스·수도사업	19.3	23.0	43.1	26.2	20.6	36.4	11.7	11.4	16.4	90.6
건설업	31.4	33.5	34.2	27.9	22.8	15.0	13.7	7.2	4.2	55.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0.8	18.5	27.1	25.5	21.9	18.5	16.3	16.2	12.7	0.0
숙박·음식점업	17.4	10.8	24.0	31.3	28.3	21.4	11.8	9.8	21.2	0.0
운수·창고·통신업	15.4	26.9	27.9	25.4	19.4	16.4	8.6	7.8	5.3	0.0
금융·보험업	7.8	17.2	15.9	13.0	10.7	8.9	9.1	7.8	5.4	10.0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1.0	30.3	37.1	30.6	30.4	31.9	25.5	29.7	27.0	0.0
교육서비스업	24.7	22.6	28.1	25.5	25.1	26.0	14.0	20.0	15.0	0.0
보건·사회복지사업	22.3	17.3	28.3	32.8	30.2	19.7	19.9	12.9	14.3	0.0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18.9	18.9	26.8	25.6	18.1	15.0	23.4	20.7	7.4	0.0
기타 업종	15.7	41.5	28.9	28.8	18.5	11.7	5.7	13.6	4.4	0.0

자료: 고용보험 DB.

1,386,1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본 고용보험동향의 분석기간인 2001년 상반기 이전에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처리기간⁵⁾으로 말미암아 분석기간에 포함되어 2001년 상반기 동안의 순수한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01년 상반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3〉

과 같다. 우선 남녀비율은 63 대 37로 2000년 하반기 64 대 36과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은 2000년 12월 피보험자의 남녀비율(69 대 31)과 비교하여 볼 때 2000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고용보험 진입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30~39세의 연령집단에서 2001년 상반기 전체 취득자의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40세 미만의 집단에서 70.9%로 취득

5)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용보험동향

<표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특성별 분포(2001년 상반기)

(단위: 명, %)

전 체	성 별		연 령 별						학력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초졸이하
1,386,177 (100.0)	869,752 (62.7)	516,135 (37.2)	80,105 (5.8)	305,966 (22.1)	329,443 (23.8)	347,075 (25.0)	207,783 (15.0)	115,805 (8.4)	28,743 (2.1)
학 령 별			지 역 별						
종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
87,060 (6.3)	774,874 (55.9)	197,474 (14.2)	274,487 (19.8)	23,539 (1.7)	528,210 (38.1)	209,271 (15.1)	126,404 (9.1)	293,680 (21.2)	112,409 (8.1)
지역별	업 종 별								
대전·충청	농수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116,197 (8.4)	5,774 (0.4)	2,432 (0.2)	439,323 (31.7)	10,900 (0.8)	164,882 (11.9)	157,795 (11.4)	30,190 (2.2)	89,575 (6.5)	29,609 (2.1)
업 종 별			사 업 장 규 모 별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사업	기타 공공 사회·개인 서비스업	기타 업종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295,144 (21.3)	38,475 (2.8)	65,563 (4.7)	41,272 (3.0)	15,207 (1.1)	229,325 (16.5)	205,075 (14.8)	278,611 (20.1)	244,873 (17.7)	171,696 (12.4)
사 업 장 규 모 별			직 종 별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건설공사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시장 판매자 등	농·어업 숙련근로자
48,124 (3.5)	53,117 (3.8)	100,374 (7.2)	54,909 (4.0)	32,089 (2.3)	77,453 (5.6)	162,123 (11.7)	382,804 (27.6)	145,943 (10.5)	4,424 (0.3)
직 종 별			취득사유별						
기능원· 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신규취득	경력취득	기타				
235,050 (17.0)	56,969 (4.1)	289,322 (20.9)	105,182 (7.6)	1161,057 (83.8)	119,938 (8.7)				

주: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각 특성별 수치가 전체 취득자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고용보험 DB.

자가 집중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3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강원지역이 38.1%로 타 지역에 비해 취득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1.7%)과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21.3%)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취득자 중 51.4%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27.6%), 단순노무직(20.9%), 기능원·관련근로자(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사유별로는 경제활동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력채용의 경우가 83.8%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1)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⁶⁾의 월평균 임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취득사유가 신규 취득인 경우의 월평균 급여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임금근로자로서의 초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1년 6월 30일 현재 적용대상 임금근로자 중 약 71.0%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신규 취득자의 특성은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시 월평균 급여액은 통상임금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2001년 상반기 신규 취득자 1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전체 월평균 급여액은 92만원이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00만원, 여자 81만원으로 남자가 19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29세 집단이 114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으며,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8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의 월평균 급여액은 117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인지역 등의 순으로 높게 받았으며, 광주·전라지역이 7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이 6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직종별에서 단순노무직의 월평균 급여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났다.

2) 피보험자격을 취득경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를 취득경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전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경험자(이하 재취득자)와 최초 취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이 2001년 상반기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138만명의 취득자 중 재취득자는 64.4%인 89만명, 최초 취득자는 35.6%인 49만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 취득경험 유무별로 구분한 피보험자격 취득자 집단의 추이를 보면 최초 취득자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취득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 특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들의 노동이동에 대한 분석은 고용보험내 노동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사회현상과 접목시켜 활용함으로써 고용보험

6) 고용보험에서 신규 취득자란 학교나 훈련원을 졸업하고 신규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노동부 고용보험 업무편람 「피보험자관리」편 참조.

고용보험동향

〈표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 월평균 급여액(2001년 상반기)

(단위 : 원, 명)

전 체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919,160.28 (104,741)	1,007,435.43 (56,513)	815,412.52 (48,205)	712,443.83 (18,527)	886,561.72 (39,340)	1,141,619.65 (24,766)	916,897.55 (11,713)	886,031.60 (7,152)	877,925.07 (3,243)
학 령 별						지 역 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710,382.73 (1,390)	708,039.80 (4,548)	778,652.76 (47,158)	825,613.23 (18,308)	1,174,796.56 (29,879)	1,483,340.08 (3,458)	1,053,203.68 (39,302)	853,350.86 (16,836)	806,755.00 (9,200)
지 역 별			업 종 별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농수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880,295.27 (16,361)	774,103.65 (14,194)	870,417.83 (8,848)	616,908.05 (435)	1,066,768.42 (95)	919,738.96 (39,072)	1,051,689.08 (119)	931,744.17 (7,458)	849,653.83 (11,571)
업 종 별								사업장규모별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기타 업종	5인미만
684,679.79 (3,354)	979,082.91 (4,909)	1,101,619.13 (3,597)	932,108.58 (16,163)	824,152.74 (4,609)	1,022,717.92 (8,582)	968,391.82 (3,083)	808,709.47 (1,690)	831,507.80 (15,560)
사 업 장 규 모 별								직종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건설공사	고위임직원·관리자
858,622.69 (12,146)	858,099.54 (16,156)	854,271.32 (17,339)	846,766.93 (14,338)	904,481.18 (4,011)	1,059,668.60 (6,219)	1,146,153.41 (17,298)	1,223,346.71 (1,670)	1,586,612.58 (604)
직 종 별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시장판매자 등	농·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	
1,270,940.69 (8,591)	939,801.45 (10,742)	1,024,966.98 (34,856)	769,336.49 (12,718)	891,012.99 (154)	830,764.75 (15,303)	740,200.61 (3,624)	730,502.40 (18,149)	

주 :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각 특성별 수치가 전체 신규 취득자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고용보험 DB.

〈표 5〉 고용보험 취득경험유무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추이(1999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전 체	최초 취득자	재취득자
1999년 상반기	1,759,000 (100.0)	993,000 (56.5)	766,000 (43.5)
하반기	1,191,000 (100.0)	508,000 (42.7)	683,000 (57.3)
2000년 상반기	1,746,108 (100.0)	762,968 (43.7)	983,140 (56.3)
하반기	1,333,747 (100.0)	494,907 (37.1)	838,840 (62.9)
2001년 상반기	1,386,177 (100.0)	493,813 (35.6)	892,364 (64.4)

주 : 본 내용에서 재취득자는 고용보험 DB 중 고용보험 시행 이후 피보험자들의 취득 및 상실 이력(history)을 관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원부 DB에서 해당기간 취득당시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파악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 고용보험 DB.

의 운영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분석에서는 순수하게 2001년 상반기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후 동 기간내에 재취득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200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격 상실후 재취득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⁷⁾. 2001년 상반기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총 138만명 중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경우는 89만명이었다. 이들 중 다음 <표 6>과 같이 2001년 상반기내에 피보험자격을 상실 후 동 기간내 재취득한 경우는 39만명으로 이는 2001년 상반기 동안의 전체 취득자 중 29.3%, 재취득자 중에서는 46.7%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편 2001년 상반기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총 124만명⁸⁾이므로 2001년 상반기내에 피보험자격을 상실 후 동 기간내 재취득한 경우의 비율은 33.4%로 2000년 하

반기(34.0%)보다 감소하였다.

1) 재취득 소요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들의 재취득 평균 소요일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보험자격 상실후 3개월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즉 상실동기가 2001년 1월부터 3월인 재취득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상실동기가 2001년 1월부터 6월인 재취득자들의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후 재취득 소요기간이 2개월 이내인 관계로 재취득 소요기간을 파악하는데는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음 <표 7>에서와 같이 상실동기가 2001년 1월부터 3월인 재취득자 27만명 중 피보험자격 상실후 1개월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는 78.4%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기(75.3%)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재취득 소요일의 전체

<표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상실자 대비 재취득률(2001년 상반기)

(단위: 명, %)

취득자(A)	취득자 중 재취득자(B)	재취득자 중 2001년 상반기내 상실후 동 기간내 재취득자(C)	상실자(D)	C/A	C/B	C/D
1,386,177	892,364	415,189	1,241,995	30.0	46.5	33.4

자료: 고용보험 DB.

7) 이렇게 분석대상을 한정시킨 이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 중에는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2001년 상반기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2001년 상반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할 때까지 경제활동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취득자의 재취득 소요일을 비롯한 노동이동 현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8) 2001년 1~6월 사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신고되어 행정적으로 처리된 총 1,594,249명 중 실제 상실일을 기준으로 한 1~6월 사이의 상실자는 1,241,995명이었다.

고용보험동향

<표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재취득 소요기간(2001년 상반기)

(단위: 명, %)

전 체	1주일 이내	8~15일 이내	16일~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264,413 (100.0)	133,058 (50.3)	21,320 (8.1)	26,489 (10.0)	83,546 (31.6)

자료: 고용보험 DB.

<표 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 특성별 재취득 평균 소요일(2001년 상반기)

(단위: 일)

전 체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25	24	26	30	30	25	23	24	22
학 령 별						지 역 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21	24	27	25	21	16	23	27	27
지 역 별			업 종 별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농수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7	25	25	41	26	28	17	25	26
업 종 별								사업장규모별
숙박·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사업	기타 공공 사회·개인 서비스업	기타 업종	5인미만
20	30	20	21	23	24	23	22	27
사 업 장 규 모 별								직종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건설공사	고위임직원· 관리자
25	25	25	25	22	25	18	29	20
직 종 별								이전직장 근속기간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시장 판매자 등	농·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6개월미만
20	23	24	24	42	27	32	26	28
이전직장 근속기간				상실사유				
6개월~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자발적 상실	비자발적 상실	기타		
26	22	21	19	23	29	11		

주: 재취득 소요일=이직당시 직장에서의 상실일~재취업 직장에서의 취득일까지의 기간.

자료: 고용보험 DB.

평균은 25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2일 정도 재취득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59세 집단이 각각 22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재취득 기간이 짧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사업장 규모별과 이전직장 근속기간별로는 300~499인을 제외하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전직장 근속기간이 길수록 재취득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고위임직원·관리자 집단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로는 자발적 상실자의 경우에 재취득 소요일이 짧게 나타났다.

2) 재취득자 노동이동행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들의 이직당시 사업장과 재취득 사업장간의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사업장 규모, 직종, 그리고 지역간 노동이동행태를 살펴보았다. 앞서 제기하였지만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고용보험내 노동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가) 사업장 규모간 노동이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들의 이직당시 사업장과 재취업 사업장간 사업장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9>와 같으며 2000년 하반기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이직당시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 규모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 재취득자 42만명 중 13만명으로 32.1%를 차지하여 대부분 재취득시 타 사업장 규모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직당시 사업장과 재취업 사업장간 사업장 규모의 변화가 없는 경우, 즉 동일한 사업장 규모로 이동한 경우를 보면 건설공사의 경우가 67.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공사의 특수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건설공사장의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내용상 업종으로 보면 건설업외 타업종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3.5%로 높게 나타났으며, 10~29인(34.1%), 30~99인(3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00~999인의 경우 그 비율이 13.8%로 이 사업장 규모에서 발생하는 이직의 경우에 대부분이 타사업장 규모로 이동한다고 하겠다. 사업장 규모를 구분할 때 건설공사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고용보험 DB의 특성상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경우 업종별로는 건설업에 포함되지만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건설공사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또는 도급한 건설회사의 상시근로자수로 대체하고 있어 사업장 규모의 구분에서 건설공사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누락되게 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동향

<표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사업장 규모간 노동이동(2001년 상반기)

(단위: 명, %)

재취업 직장 이전직장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건설 공사	전 체
5인미만	13,714 (31.8) (3.3)	9,092 (21.1) (2.2)	9,089 (21.1) (2.2)	5,344 (12.4) (1.3)	2,922 (6.8) (0.7)	673 (1.6) (0.2)	834 (1.9) (0.2)	1,077 (2.5) (0.3)	354 (0.8) (0.1)	43,099 (100.0) (10.4)
5~9인	9,960 (19.9) (2.4)	13,663 (27.3) (3.3)	12,515 (25.0) (3.0)	6,780 (13.6) (1.6)	3,743 (7.5) (0.9)	854 (1.7) (0.2)	874 (1.7) (0.2)	1,253 (2.5) (0.3)	358 (0.7) (0.1)	50,000 (100.0) (12.0)
10~29인	11,787 (14.5) (2.8)	15,424 (19.0) (3.7)	27,648 (34.1) (6.7)	14,125 (17.4) (3.4)	6,680 (8.2) (1.6)	1,561 (1.9) (0.4)	1,461 (1.8) (0.4)	1,925 (2.4) (0.5)	486 (0.6) (0.1)	81,097 (100.0) (19.5)
30~99인	7,649 (9.3) (1.8)	9,928 (12.1) (2.4)	20,079 (24.4) (4.8)	26,214 (31.9) (6.3)	10,283 (12.5) (2.5)	2,218 (2.7) (0.5)	2,288 (2.8) (0.6)	3,051 (3.7) (0.7)	502 (0.6) (0.1)	82,212 (100.0) (19.8)
100~299인	4,790 (7.9) (1.2)	5,386 (8.8) (1.3)	9,629 (15.8) (2.3)	12,816 (21.0) (3.1)	18,220 (29.9) (4.4)	3,967 (6.5) (1.0)	2,268 (3.7) (0.5)	3,451 (5.7) (0.8)	381 (0.6) (0.1)	60,908 (100.0) (14.7)
300~499인	1,190 (5.7) (0.3)	1,638 (7.8) (0.4)	2,236 (10.6) (0.5)	3,382 (16.1) (0.8)	4,695 (22.3) (1.1)	3,927 (18.7) (0.9)	2,435 (11.6) (0.6)	1,459 (6.9) (0.4)	70 (0.3) (0.0)	21,032 (100.0) (5.1)
500~999인	1,181 (5.8) (0.3)	1,829 (8.9) (0.4)	2,869 (14.0) (0.7)	3,662 (17.9) (0.9)	3,809 (18.6) (0.9)	2,363 (11.6) (0.6)	2,824 (13.8) (0.7)	1,819 (8.9) (0.4)	96 (0.5) (0.0)	20,452 (100.0) (4.9)
1,000인 이상	2,370 (5.1) (0.6)	3,115 (6.8) (0.8)	4,273 (9.3) (1.0)	6,269 (13.6) (1.5)	5,447 (11.8) (1.3)	1,994 (4.3) (0.5)	2,281 (4.9) (0.5)	20,065 (43.5) (4.8)	289 (0.6) (0.1)	46,103 (100.0) (11.1)
건설공사	482 (4.7) (0.1)	601 (5.9) (0.1)	745 (7.3) (0.2)	717 (7.0) (0.2)	445 (4.3) (0.1)	65 (0.6) (0.0)	106 (1.0) (0.0)	192 (1.9) (0.0)	6,889 (67.3) (1.7)	10,242 (100.0) (2.5)
전 체	53,123 (12.8) (12.8)	60,676 (14.6) (14.6)	89,083 (21.5) (21.5)	79,309 (19.1) (19.1)	56,244 (13.5) (13.5)	17,622 (4.2) (4.2)	15,371 (3.7) (3.7)	34,292 (8.3) (8.3)	9,425 (2.3) (2.3)	415,145 (100.0) (100.0)

주 : 1) 음영부분은 동일한 사업장 규모간의 이동을 말함.

2) 건설공사의 구분은 고용보험 DB내 보험료징수 DB에서 건설공사 금액 및 공사기간의 유무로 산출하였음.

3)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각 특성별 수치가 전체 재취득자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고용보험 DB.

또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29인과 30~99인의 사업장 규모에서 동일한 사업장 규모로 이동한 경우가 각각 전체의 6.7%,

6.3%를 차지하여 2001년 상반기내 전체 재취득자 중 동종사업장 규모간 이동자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직종간 노동이동(2001년 상반기)

(단위: 명, %)

재취업 직장 이전직장	고위 임직원 ·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시장판매 자 등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관련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전 체
고위임직원 · 관리자	5,900 (43.5) (1.4)	848 (6.3) (0.2)	1,205 (8.9) (0.3)	3,735 (27.6) (0.9)	496 (3.7) (0.1)	9 (0.1) (0.0)	769 (5.7) (0.2)	94 (0.7) (0.0)	499 (3.7) (0.1)	13,555 (100.0) (3.3)
전문가	898 (4.1) (0.2)	8,301 (37.9) (2.0)	4,486 (20.5) (1.1)	5,622 (25.7) (1.4)	748 (3.4) (0.2)	23 (0.1) (0.0)	1,230 (5.6) (0.3)	104 (0.5) (0.0)	492 (2.2) (0.1)	21,904 (100.0) (5.3)
기술공 · 준전문가	1,389 (2.5) (0.3)	5,615 (10.3) (1.4)	23,229 (42.4) (5.6)	8,878 (16.2) (2.1)	1,640 (3.0) (0.4)	106 (0.2) (0.0)	9,914 (18.1) (2.4)	815 (1.5) (0.2)	3,144 (5.7) (0.8)	54,730 (100.0) (13.2)
사무직	4,756 (4.0) (1.1)	6,931 (5.9) (1.7)	9,598 (8.2) (2.3)	76,678 (65.2) (18.5)	7,322 (6.2) (1.8)	76 (0.1) (0.0)	6,430 (5.5) (1.5)	1,032 (0.9) (0.2)	4,802 (4.1) (1.2)	117,625 (100.0) (28.3)
서비스·시 장판매자 등	392 (1.3) (0.1)	691 (2.2) (0.2)	1,633 (5.2) (0.4)	7,724 (24.7) (1.9)	13,329 (42.7) (3.2)	31 (0.1) (0.0)	2,422 (7.8) (0.6)	924 (3.0) (0.2)	4,092 (13.1) (1.0)	31,238 (100.0) (7.5)
농·어업 숙련근로자	9 (0.7) (0.0)	25 (1.8) (0.0)	131 (9.5) (0.0)	82 (5.9) (0.0)	28 (2.0) (0.0)	755 (54.7) (0.2)	176 (12.8) (0.0)	25 (1.8) (0.0)	149 (10.8) (0.0)	1,380 (100.0) (0.3)
기능원· 관련근로자	873 (1.2) (0.2)	1,951 (2.7) (0.5)	11,128 (15.2) (2.7)	7,496 (10.2) (1.8)	2,872 (3.9) (0.7)	163 (0.2) (0.0)	31,495 (42.9) (7.6)	3,909 (5.3) (0.9)	13,482 (18.4) (3.2)	73,369 (100.0) (17.7)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10 (0.7) (0.0)	138 (0.8) (0.0)	1,106 (6.8) (0.3)	1,290 (7.9) (0.3)	1,242 (7.6) (0.3)	18 (0.1) (0.0)	3,657 (22.4) (0.9)	5,976 (36.6) (1.4)	2,813 (17.2) (0.7)	16,350 (100.0) (3.9)
단순노무직	509 (0.6) (0.1)	663 (0.8) (0.2)	4,681 (5.5) (1.1)	6,814 (8.0) (1.6)	5,705 (6.7) (1.4)	128 (0.2) (0.0)	15,442 (18.2) (3.7)	3,029 (3.6) (0.7)	48,067 (56.5) (11.6)	85,038 (100.0) (20.5)
전 체	14,836 (3.6) (3.6)	25,163 (6.1) (6.1)	57,197 (13.8) (13.8)	118,319 (28.5) (28.5)	33,382 (8.0) (8.0)	1,309 (0.3) (0.3)	71,535 (17.2) (17.2)	15,908 (3.8) (3.8)	77,540 (18.7) (18.7)	415,189 (100.0) (100.0)

주: 음영부분은 동일한 직종간의 이동을 말함.
자료: 고용보험 DB.

나) 직종간 노동이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들의 직종간 이동행태를 살펴보면 2000년 하반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표 10〉과 같이 동종직종간 이동한 피보험자는 전체 재취득자 42만명 중 21만명으로 51.5%의

비율을 보여 2001년 상반기내 재취득자의 절반이 동종직종을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직종간 이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직의 경우가 65.2%로 가장 높았으며, 단순노무직 56.5%, 농·어업 숙련근로자 54.7% 등의 직종이 타직종보다 동종직종간 이

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직종의 경우에 이직시 절반 이상이 동종직종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종직종간 이동이 가장 드문 직종은 장치기계 조작·조립원으로 36.6%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 상반기 동안 전체 재취득자 중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한 경우가 18.5%, 단순노무직내에서의 이동이 11.6%,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내에서의 경우가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재취득자의 지역간 노동이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들의 이전 사업장과 재취득 사업장간의 지역이동 결과는 2000년 하반기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음 <표 11>과 같다. 우선 동일한 지역내에서 재취득을 위해 이동한 경우는 2000년 하반기내 재취득자 총 42만명 중 32만명으로 전체의 78.0%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이직시 사업장과 동일한 지역에서 재취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과 상이한 지역으로의 이동도 22.0%나 차지하

<표 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자의 지역간 노동이동(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재취업 직장 이전직장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전 체
서울·강원	130,028 (78.6) (31.3)	4,321 (2.6) (1.0)	2,327 (1.4) (0.6)	20,879 (12.6) (5.0)	2,885 (1.7) (0.7)	4,927 (3.0) (1.2)	165,367 (100.0) (39.8)
부산·경남	4,846 (7.7) (1.2)	53,974 (85.6) (13.0)	1,593 (2.5) (0.4)	1,423 (2.3) (0.3)	623 (1.0) (0.2)	627 (1.0) (0.2)	63,086 (100.0) (15.2)
대구·경북	2,716 (7.2) (0.7)	1,563 (4.2) (0.4)	31,200 (83.2) (7.5)	1,119 (3.0) (0.3)	395 (1.1) (0.1)	516 (1.4) (0.1)	37,509 (100.0) (9.0)
인천·경기	18,705 (22.8) (4.5)	1,309 (1.6) (0.3)	933 (1.1) (0.2)	56,804 (69.3) (13.7)	1,008 (1.2) (0.2)	3,232 (3.9) (0.8)	81,991 (100.0) (19.7)
광주·전라	2,684 (8.2) (0.6)	554 (1.7) (0.1)	367 (1.1) (0.1)	1,288 (3.9) (0.3)	27,328 (83.0) (6.6)	689 (2.1) (0.2)	32,910 (100.0) (7.9)
대전·충청	4,650 (13.5) (1.1)	663 (1.9) (0.2)	620 (1.8) (0.1)	3,068 (8.9) (0.7)	631 (1.8) (0.2)	24,693 (71.9) (5.9)	34,325 (100.0) (8.3)
전 체	163,629 (39.4) (39.4)	62,384 (15.0) (15.0)	37,040 (8.9) (8.9)	84,581 (20.4) (20.4)	32,870 (7.9) (7.9)	34,684 (8.4) (8.4)	415,188 (100.0) (100.0)

주 : 1) 음영부분은 동일한 지역간의 이동을 말함.

2)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각 특성별 수치가 전체 재취득자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고용보험 DB.

고 있다. 동일한 지역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는 부산·경남(85.6%)과 대구·경북(83.2%)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지역이 71.9%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당시 사업장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상반기 동안 전체 이동자수 중에서는 서울·강원지역의 피보험자들의 동일 지역 이동이 31.3%로 가장 많았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가. 개 요

2000년 12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6,747,263명을 기준으로 볼 때 2001년 1~6월 사이에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된 피보험자는 1,581,751명으로 나타났다⁹⁾. 성별로 보면 남자가 63.6%, 여자가 36.4%의 비율을 나타내어 전체 피보험자의 남녀 성비와 비교하여 볼 때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1.9%, 30~39세가 2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실사유별로는 자발적 상실자가 71.9%,

비자발적 상실자가 28.1%를 차지했다. 비자발적 상실자의 비중은 전기인 2000년 하반기의 24.0%, 전년동기인 2000년 상반기의 22.9%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2001년 상반기의 악화된 경기사정을 반영하고 있다¹⁰⁾.

사업장 규모별로는 10~29인 사업장에서 19.4%, 30~99인 사업장에서 19.1%, 100~299인 사업장에서 14.4%의 순으로 상실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의 비중도 3.4%에 이른다.

상실자의 상실당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6월 미만인 35.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1~2년으로 26.6%, 6월 이상 1년 미만이 19.9%의 순이었다. 한편 피보험기간별로 보면 전체 상실자 중 1~2년이 34.7%로 가장 많았고, 3~4년 15.9%, 6월 미만 19.6%의 순이었다. 근속기간과 비교해 피보험기간이 6월 미만인 상실자의 비중이 낮은 것은 피보험기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이전직장의 피보험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2001년 상반기 상실자들을 상실사유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집단 중 180일 이

9) 이하에서는 200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상실신고 처리된 사람들 중 실제 상실일 기준으로 200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1,241,99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0)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0년 8월 102.1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00년 11월에는 100 미만인 99.9로 떨어졌고, 이후 하락을 계속하여 2001년 6월말 현재 97.0을 기록하여 2000년 중반 이후 경기가 계속 내리막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별 분포(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전 체	성 별		연 령 별							학 령 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초졸이하	중졸
1,241,995 (100.0)	790,419 (63.6)	333,451,576 (36.4)	62,255 (5.0)	225,581 (18.2)	294,134 (23.7)	336,203 (27.1)	195,295 (15.7)	116,485 (9.4)	12,147 (1.0)	33,563 (2.7)	91,063 (7.3)
학 령 별			지 역 별							업 종 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농수림어업	광업
717,153 (57.7)	158,512 (12.8)	224,458 (18.1)	17,357 (1.4)	465,368 (37.5)	190,754 (15.4)	117,200 (9.4)	268,394 (21.6)	98,815 (8.0)	101,570 (8.2)	4,724 (0.4)	2,703 (0.2)
업 종 별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소비자	숙박 음식점	운수창고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기타 공공	기타 산업
443,190 (35.7)	9,890 (0.8)	147,251 (11.9)	128,793 (10.4)	23,370 (1.9)	87,763 (7.1)	32,596 (2.6)	245,328 (19.8)	26,574 (2.1)	45,600 (3.7)	31,832 (2.6)	12,454 (1.0)
사 업 장 구 모 별											이직사유별
5인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건설공사	전직·자영업
156,765 (12.6)	155,759 (12.5)	240,561 (19.4)	105,505 (8.5)	64,919 (5.2)	66,581 (5.4)	179,456 (14.4)	54,467 (4.4)	56,062 (4.5)	119,803 (9.6)	42,143 (3.4)	414,091 (33.3)
이 직 사 유 별											이전직장 근속기간별
출산 등 가사사정	질병부상 노령 등	징계해고	기타 개인사정	폐업도산 공사중단	경영상 필요	근로조건 변동	기타 회사사정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기타	6월미만
40,615 (3.3)	22,350 (1.8)	4,282 (0.3)	412,637 (33.2)	49,518 (4.0)	17,503 (1.4)	17,377 (1.4)	177,882 (14.3)	7,366 (0.6)	73,771 (5.9)	4,714 (0.4)	441,211 (35.5)
이전직장 근속기간별					피보험기간별					직 종 별	
6월~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0년이상	6월미만	6월~ 1년미만	1~2년	3~4년	5~10년	고위임직원 · 관리자	전문가
247,693 (19.9)	330,448 (26.6)	89,944 (7.2)	80,225 (6.5)	52,557 (4.2)	243,520 (19.6)	189,132 (15.2)	430,886 (34.7)	197,526 (15.9)	181,042 (14.6)	36,823 (3.0)	57,802 (4.7)
직 종 별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근로자	농어업 숙련	기능원	조작원 조립원	단순 노무직					
129,744 (10.4)	333,568 (26.9)	121,034 (9.7)	4,259 (0.3)	230,655 (18.6)	59,020 (4.8)	269,201 (21.7)					

자료 : 고용보험 DB.

상의 피보험기간을 갖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3〉에서 분포를 살펴보면 2000년 상반기 이후 180일 미만 피보험기간인 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발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거의 분포가 비슷한 반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사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다음에서 나타나듯이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 추이가 2000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실업급여 수급가능자 추이(2000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전 체	180일(6월)미만 · 자발적 상실	180일(6월)미만 · 비자발적 상실	180일(6월)이상 · 자발적 상실	180일(6월)이상 · 비자발적 상실 (실업급여 수급가능자)
2000년 상반기	1,329,131(100.0)	302,101(22.7)	53,834(4.1)	722,871(54.4)	250,325(18.8)
하반기	1,149,200(100.0)	234,674(20.4)	46,298(4.0)	638,209(55.5)	230,019(20.0)
2001년 상반기	1,237,392(100.0)	207,149(16.7)	35,906(2.9)	686,826(55.5)	307,511(24.9)

주 : 1) 본 분석에서 상실자는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체 상실자 중 고용보험 비적용 등의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치임.

2)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1)으로 2000년 3월 31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6개월, 2000년 4월 1일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8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3) 분석과정 중 각 특성별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전체 상실자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고용보험 DB.

나.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

다음은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것이다. 비자발적 이직자를 따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들의 비중이 경기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 재정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림 4]와 같이 2001년 상반기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율은 28.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1999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경기사정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한 이직의 비중은 남자 쪽이 높았으며, 가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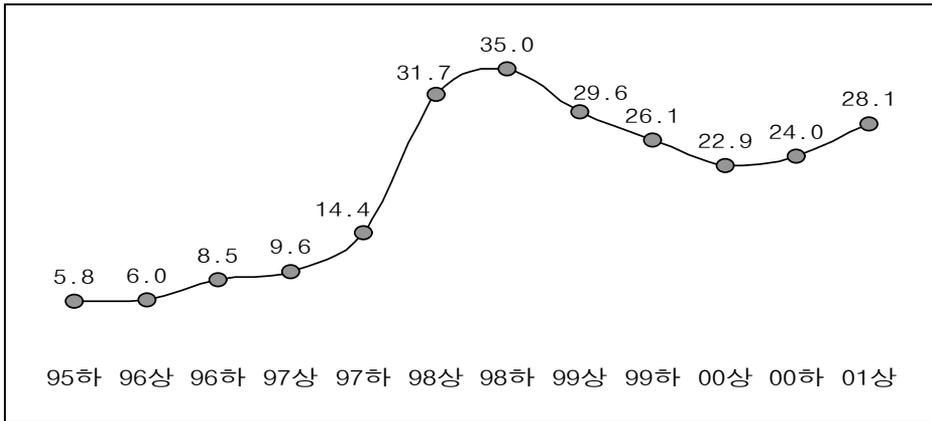
정으로 인한 이직은 여자가 높았다. 비정규직 등이 많은 여자의 노동시장 특성상 계약 만료로 이직하는 비중이 남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부표 24 참조).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반면 권고사직이나 정년 등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부표 25 참조).

근속기간별로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아졌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반면 정년, 권고사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인해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부표 26 참조).

학력별로 보면 초졸 이하와 중졸에서 높

(그림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 추이(1995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



주 :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해당기간 비자발적 상실자수÷해당기간 전체 상실자수)×100.
자료 : 고용보험 DB.

게 나타났다. 초졸과 중졸의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해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낮은 반면 계약만료와 공사종료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7 참조).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규모 사업장으로 올수록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이 낮아지다가 다시 대규모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자발적 상실자의 비중이 낮은 30~299인 사업장이 다른 규모에 비해 전직 및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휴업 및 임금체불이나 권고사직(명퇴)으로 이직할 확률이 낮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경우는 비자발

적 상실자의 비중이 51.8%로 이는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계약기간만료 및 공사종료로 인한 이직의 비중이 높다는 업종적 특성의 결과이다(부표 28 참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사업(59.8%), 농수림어업(46.2%), 광업(43.5%)에서, 직종별로는 농·어업 숙련근로자(51.6%), 고위임직원·관리자(43.6%), 사무직(3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업 숙련근로자와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계약만료·공사종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고위임직원·관리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부표 30 참조).

〈표 14〉 특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상실자 비중(2001년 상반기)

(단위: %)

전 체	성 별		연 령 별							학 령 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초졸이하	중졸
28.1	28.0	27.0	7.7	16.5	24.1	29.8	36.5	44.7	58.3	45.8	34.2
학 령 별			업 종 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농수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소비자	숙박 음식점업	운수창고 통신업
25.0	25.5	32.0	31.3	46.2	43.5	24.4	59.8	35.5	23.3	23.1	18.7
업 종 별						사 업 장 규 모 별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 대·사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기타 공공	기타 산업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39.6	29.8	33.3	22.5	30.9	53.8	29.0	25.7	24.0	23.1	23.5	29.6
사 업 장 규 모 별			직 종 별								
500~ 999인	1,000인 이상	건설공사	고위 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시장판매자 등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30.4	40.0	51.8	43.6	30.1	28.4	30.2	18.3	51.6	26.7	15.1	28.9
이전직장 근속기간별						피보험기간별					
6월 미만	6월~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0년이상	6월미만	6월~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6.0	28.7	30.7	34.9	43.9	63.8	14.7	26.2	27.9	28.6	45.0	

자료 : 고용보험 DB.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률

전기의 피보험자수(2000년 12월 말)로 이번 기의 상실자수를 나누어 계산한 상실률¹¹⁾은 [그림 5]에서 보듯이 23.4%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까지 10%대에서 머물던 상실률이 1998년 이후 20%대로 올라간 것은 1998년부터의 급속한 적용확대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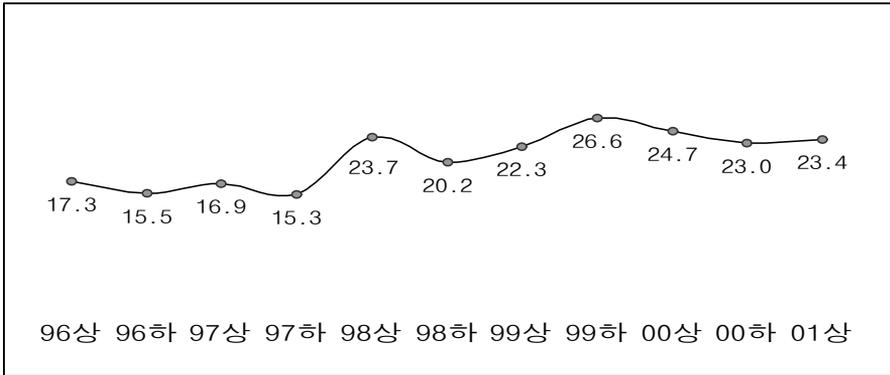
노동이동이 활발한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들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 포괄되었기 때문이다.

〈표 15〉에는 피보험자의 특성별로 상실률이 나타나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상실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상실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 별로 보면 5~99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장

11) 전기말 피보험자수는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고용보험통계월보』의 피보험자 수치를 이용하였으며, 각 기의 상실자수는 고용보험 DB에서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수는 처리일 기준으로, 상실자수는 상실일 기준으로 생성된 수치이므로 실제의 수치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고용보험동향

(그림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률 추이(1996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



주 : 상실률=(해당 기간 상실자수÷전기말 피보험자수)×100.
 자료 :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표 1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별 상실률(2001년 상반기) (단위 : %, 명)

성 별		연 령 별						학 령 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초졸	중졸	
17.1 (790,419) (4,633,208)	21.4 (451,576) (2,114,055)	42.2 (62,255) (147,609)	23.0 (519,715) (2,260,922)	14.9 (336,203) (2,252,762)	14.1 (195,295) (1,388,699)	18.4 (116,485) (631,723)	18.5 (12,147) (65,548)	14.7 (33,563) (227,553)	15.6 (91,063) (582,591)	
학 령 별		직 중 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판매근로자	농어업 숙련근로자
19.8 (717,153) (3,624,718)		19.6 (158,512) (810,326)	16.2 (224,458) (1,386,971)	15.1 (17,357) (115,050)	13.4 (36,823) (275,334)	17.2 (57,802) (336,208)	17.5 (129,744) (739,465)	16.8 (333,568) (1,980,430)	18.1 (121,034) (667,500)	27.3 (4,259) (15,626)
직 중 별		사 업 장 규 모 별								
기능원·관련 기능근로자	기계장치 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6.5 (230,655) (1,401,170)	16.7 (59,020) (352,634)	27.5 (269,201) (978,896)	15.6 (156,765) (1,001,901)	23.7 (155,759) (656,355)	23.4 (240,561) (1,030,099)	22.0 (237,005) (1,078,338)	18.9 (179,456) (950,988)	15.5 (54,467) (350,900)	13.9 (56,062) (401,960)	
사업장규모별		업 중 별								
1,000인 이상	건설공사	농수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참고 및 통신업	
10.1 (119,803) (1,181,418)	44.2 (42,143) (95,304)	24.0 (4,724) (19,705)	15.0 (2,703) (17,985)	16.7 (443,190) (2,648,856)	17.8 (9,890) (55,440)	28.9 (147,251) (509,958)	17.8 (128,793) (724,676)	13.9 (23,370) (167,565)	15.0 (87,763) (586,293)	
업 중 별		업 중 별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기타업종					
8.4 (32,596) (389,633)	27.1 (245,328) (905,435)	18.2 (26,574) (146,150)	16.8 (45,600) (270,642)	15.2 (31,832) (209,583)	13.1 (12,454) (95,342)					

주 : 1) 상실률=(해당 기간 상실자수÷전기말 피보험자수)×100.
 2) 표안의 수치 중 가장 위는 상실률, 가운데는 상실자수, 맨 아래는 피보험자수.
 자료 : 고용보험 DB;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에서 상실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커질수록 상실률은 낮아졌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상실률이 대단히 높아 44.2%의 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높았고, 금융·보험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II. 고용보험사업 활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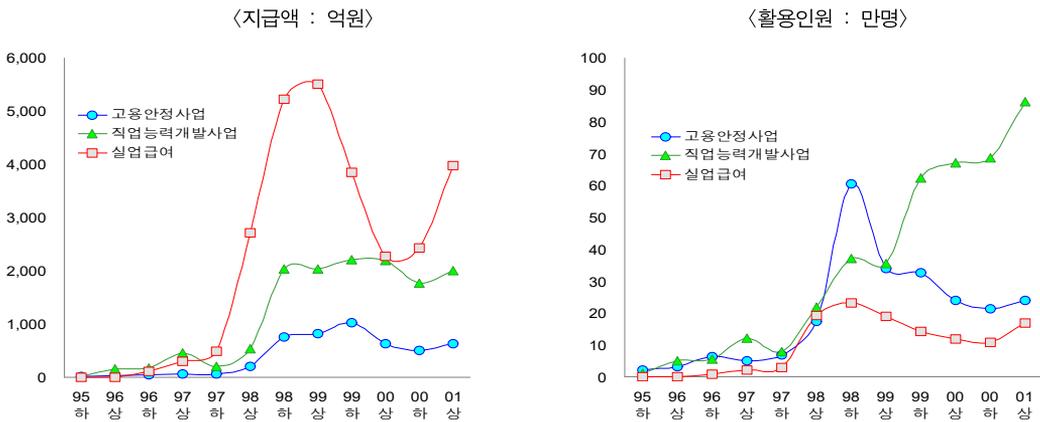
1. 개요

2001년 상반기 동안 고용보험사업의 활용실적을 고용보험 3개 사업별 지급액과 활용인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그림 6] 및 <표 16>과 같다. 우선 1995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의 전체적인 지원실적

을 보면 고용보험 시행 이후 1997년까지 지급액 및 활용인원의 수준은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악화로 인하여 기업의 휴·폐업 등이 늘어나고 고실업시대를 맞이하면서 고용보험 3개 사업 모두 지급액 및 활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용보험사업의 활용은 1999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2001년 상반기 동안 지급액과 활용인원이 전반기보다 늘어났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활용인원은 크게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다소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전반기 대비 지급액과

(그림 6) 고용보험사업별 지급액 및 활용인원 추이(1995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고용보험 DB.

활용인원 모두 늘어난 것은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고용보험 비자발적 상실자의 증가와 2000년 하반기 이직자들 가운데 피보험기간이 5~10년차인 실업자가 등장하면서 피보험기간에 연동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는 구직급여의 특성 때문이라 하겠다. 고용안정사업 역시 최근 경기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크게 늘어났으며, 고용촉진장려금 활용은 전반기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시기 경기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2001년 상반기부터 시행된 일부 지원제도의 개선이 활용증대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라 하겠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활용인원은 2000년 하반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기에 크게 감소했던 실업자재취직훈련 참여자의 증가,

수강장려금 활용의 급증, 그리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용이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

2. 고용안정사업

가. 개 요

2001년 상반기 고용안정사업 활용실적은 지급액 면에서 63,527백만원, 활용인원 면에서 288,791명이 활용하여 1997년 말 경제위기 이래 활용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2000년 하반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고용안정사업의 몫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대비 지급액 실적도 14.9%로 2000년 하반기의 11.9%보다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보험료 대비

〈표 16〉 고용보험사업별 지급액 및 활용인원 추이(1995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억원, 만명)

		지급액			활용인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신규구직급여수급자)
1995	하반기	15	18	0	2	1	0
1996	상반기	33	163	0	3	5	0
	하반기	52	172	105	6	6	1
1997	상반기	55	458	300	5	12	2
	하반기	65	202	487	7	8	3
1998	상반기	199	544	2,709	17	22	19
	하반기	765	2,036	5,221	61	37	23
1999	상반기	823	2,043	5,514	34	35	19
	하반기	1,020	2,206	3,848	33	62	14
2000	상반기	637	2,196	2,279	23	69	12
	하반기	499	1,772	2,429	21	70	11
2001	상반기	635	1,707	3,974	29	110	1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고용보험 DB.

지급액 비율이 최고였던 1998년 하반기의 54.4%나 1999년 하반기의 30.7%에 비해서는 매우 낮아진 것이다(표 21 참조).

전반기에 비해 고용안정사업의 활용이 증가한 것은 우선 2001년 상반기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증대 때문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휴업수당지원금의 활용이 전반기와 비교하여 지급면에서 89.4%, 활용인원 면에서 75.4% 증가한 것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몇몇 지원금의 제도개선이 활용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경우 임금에 대한 지원율이 기존의 2/3(대기업 1/3)에서 3/4(대기업 2/3)으로 강화되었고, 무급휴직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액이 기존의 15만원(대기업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동 지원금의 활용은 전반기와 비교하여 지급액 측면에서 각각 173.8%와 676.0%씩 크게 증가하였다.

나. 세부사업별 활용추이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등의 고용조정지원제도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고용촉진지원제도로 구분되어진다. 1996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을 세부사업별 지급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

보육시설지원금 등의 고용촉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더불어 꾸준히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은 시기별로 활용실적의 변동이 크며, 전체적으로 보면 1998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2000년 하반기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1년 상반기에 다시 활용이 증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조정지원금의 경우 1997년 하반기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1997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한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대폭 늘어났으며 특히 휴업수당지원금과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중심으로 활용이 증가되었다. 1999년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채용장려금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다가 2000년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7> 및 <표 18>에서 나타나듯이 2001년 상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26,860백만원이 지급되어 고용안정사업 총지급액 중 4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기에 비해 110.2%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경제위기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한 지급액은 1998년 상반기 총지급액의 60%를 차지한 것을 정점으로 하여 그 비율이 1999년 상반기 35.7%, 2000년 상반기 18.8% 등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 2001년 상반기 29.4%로 그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 한편 채용장려

고용보험동향

〈표 17〉 고용안정사업 세부사업별 지급액 추이(1996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백만원, %)

		1996 상반기	1996 하반기	1997 상반기	1997 하반기	1998 상반기	1998 하반기	1999 상반기	1999 하반기	2000 상반기	2000 하반기	2001 상반기	
전 체		3,275 (100.0)	5,216 (100.0)	5,545 (100.0)	6,538 (100.0)	19,942 (100.0)	76,539 (100.0)	82,261 (100.0)	101,972 (100.0)	63,680 (100.0)	49,869 (100.0)	63,527 (100.0)	
고용 조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6 (0.5)	0 (0.0)	19 (0.3)	25 (0.4)	12,554 (63.0)	61,669 (80.6)	47,653 (57.9)	31,544 (30.9)	16,417 (25.8)	12,780 (25.6)	26,860 (42.2)	
	휴 업	16 (4.9)	0 (0.0)	19 (0.3)	25 (0.4)	11,879 (60.0)	41,452 (54.2)	29,369 (35.7)	18,043 (17.7)	11,974 (18.8)	9,861 (19.8)	18,676 (29.4)	
	인력재배치	0 (0.0)	0 (0.0)	0 (0.0)	0 (0.0)	95 (0.5)	389 (0.5)	114 (0.1)	280 (0.3)	279 (0.4)	174 (0.3)	324 (0.5)	
	고용유지훈련	-	-	-	-	243 (1.2)	15,425 (20.2)	9,924 (12.1)	6,602 (6.5)	1,900 (3.0)	1,592 (3.2)	4,359 (6.9)	
	근로시간 단축	-	-	-	-	178 (0.9)	388 (0.5)	313 (0.4)	404 (0.4)	30 (0.0)	44 (0.1)	92 (0.1)	
	사외파견	-	-	-	-	159 (0.8)	643 (0.8)	656 (0.8)	464 (0.5)	66 (0.1)	26 (0.0)	15 (0.0)	
	휴 직	-	-	-	-	-	3,372 (4.4)	7,277 (8.8)	5,751 (5.6)	2,168 (3.4)	1,083 (2.2)	3,393 (5.3)	
	전직훈련지원금	0 (0.0)	0 (0.0)	0 (0.0)	2 (0.0)	0 (0.0)	32 (0.0)	-	-	-	-	-	
	창업교육훈련지원금	-	-	-	2 (0.0)	19 (0.1)	143 (0.2)	-	-	-	-	-	
	채용장려금	-	-	-	0 (0.0)	63 (0.3)	5,815 (7.6)	22,517 (27.4)	52,854 (51.8)	27,465 (43.1)	13,316 (26.7)	10,457 (16.4)	
	재고용장려금	-	-	-	-	-	-	-	517 (0.5)	838 (1.3)	585 (1.2)	375 (0.6)	
	소 계	16 (0.5)	0 (0.0)	19 (0.3)	29 (0.4)	12,636 (63.4)	67,659 (88.4)	70,170 (85.3)	84,915 (83.3)	44,720 (70.2)	26,681 (53.5)	38,093 (60.0)	
	고용 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2,392 (73.0)	4,045 (77.5)	4,113 (74.2)	4,694 (71.8)	5,082 (25.5)	7,034 (9.2)	10,284 (12.5)	14,548 (14.3)	16,260 (25.5)	20,374 (40.9)	22,040 (34.7)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610 (18.6)	830 (15.9)	946 (17.1)	1,085 (16.6)	1,375 (6.9)	884 (1.2)	689 (0.8)	751 (0.7)	903 (1.4)	1,190 (2.4)	1,410 (2.2)
고령자·여성 재고용장려금		-	-	-	2 (0.0)	69 (0.3)	97 (0.1)	43 (0.0)	431 (0.4)	191 (0.3)	187 (0.4)	171 (0.3)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257 (7.8)	341 (6.5)	467 (8.4)	728 (11.1)	780 (3.9)	865 (1.1)	979 (1.2)	1,052 (1.0)	1,236 (1.9)	1,247 (2.5)	1,142 (1.8)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	-	-	-	-	-	-	49 (0.0)	170 (0.3)	190 (0.4)	484 (1.9)	
종업원기업인수 지원금		-	-	-	-	-	-	96 (0.1)	226 (0.2)	200 (0.3)	-	187 (0.3)	
소 계		3,259 (99.5)	5,216 (100)	5,526 (99.7)	6,509 (99.6)	7,306 (36.6)	8,880 (11.6)	12,091 (14.7)	17,057 (16.7)	18,960 (29.8)	23,188 (46.5)	25,434 (40.0)	

주 : 1) 1997년 하반기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중 재고용장려금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고령자 및 여자의 재고용을 위한 장려금의 성격이었음. 이전 고용보험동향 자료와의 시계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령자 및 여자고용촉진장려금에서 고령자·여자재고용장려금 항목을 빼서 따로 보고하였고, 고용보험동향에서 실적이 보고되지 않았거나 실적이 미미한 적응훈련지원금, 직장보육시설치비 용자,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인력은 행정지원, 고급인력정보센터지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한편 2001년 상반기 실적 중 고용조정지원금 총액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실적(402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 표안의 수치 중 0으로 표기된 부분은 실적은 있으나 지급액이 반올림하여 100만원 미만인 것이며, ()안의 수치 중 0.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비율이 0.1% 미만인 것임.

3) 본 표의 실적치는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타기관에서 발표하는 실적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고용보험 DB.

금은 총 10,457백만원이 지급되어 전반기 대비 21.5% 감소하였고 총지급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16.4%로 크게 낮아졌다. 채용장려금은 이미 2000년 7월 1일부터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2001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고용촉진지원제도의 경우에는 1995년까지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하고는 제도활용이 미미하였으나 1996년부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특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제도활용이 크게 늘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995년 이래 제도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상반기 현재 전체 고용안정사업 중 가장 많은 22,040백만원이 지급되었다.

고용안정사업의 활용실적이 최근 2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하반기에 비해 지급액은 27.4% 늘었고 활용인원도 37.2% 증가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휴업수당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의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증대(지급액으로 볼 때 전반기 대비 110.2% 증가, 활용인원으로 볼 때 전반기 대비 113.0% 증가) 때문이다.

2001년 상반기 고용안정사업의 세부사업별 활용정도를 살펴보면(부표 31 참조), 사업장수¹²⁾로 볼 때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총 17,551개의 사업장 중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55.5%(9,735개)의 사업장이 활용하여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채용장려금을 21.4%(3,748개)의 사업장이 활용하였으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16.2%(2,848개)의 사업장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세 가지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전체 활용사업장의 93.0%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 활용에 있어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활용인원 면에서는 전체 활용인원 289천명 중에서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35.2%(102천명),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34.7%(100천명),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9.6%(28천명)가 활용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급액 면에서는 전체 635억원 중에서 휴업수당지원금에 29.4%(187억원),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17.7%(113억원),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17.0%(108억원), 채용장려금에 16.5%(105억원)가 지원되었다.

12) 여기서 사업장수는 중복된 숫자가 아니다. 즉 2001년 상반기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2번 이상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수는 1개로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동향

〈표 18〉 고용안정사업 세부사업별 활용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백만원, %)

	활용인원				증감률		지급액				증감률		
	1999 하반기	2000 상반기	2000 하반기	2001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전반기 대비	1999 하반기	2000 상반기	2000 하반기	2001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전반기 대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 체	325,796	234,590	210,489	288,791	23.1	37.2	101,972	63,671	49,863	63,527	-0.2	27.4	
고용 조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40,077 (43.0)	84,045 (35.8)	64,201 (30.5)	136,723 (47.3)	62.7	113.0	31,544 (31.0)	16,417 (25.8)	12,777 (25.6)	26,860 (42.2)	63.6	110.2
	휴업	99,778 (30.6)	72,965 (31.1)	57,132 (27.1)	100,230 (34.1)	37.4	75.4	18,043 (17.7)	11,974 (18.8)	9,861 (19.8)	18,676 (29.4)	56.0	89.4
	근로시간 단축	4,128 (1.3)	306 (0.1)	349 (0.2)	720 (0.3)	135.3	106.3	404 (0.4)	30 (0.0)	43 (0.1)	92 (0.1)	206.7	114.0
	훈련	17,303 (5.3)	5,588 (2.4)	3,885 (1.8)	27,790 (9.6)	397.3	615.3	6,602 (6.5)	1,900 (3.0)	1,592 (3.2)	4,359 (6.9)	129.4	173.8
	사외파견	638 (0.1)	138 (0.1)	46 (0.0)	25 (0.0)	-81.9	-45.7	464 (0.5)	66 (0.1)	26 (0.0)	15 (0.0)	-77.3	-42.3
	인력재배치	435 (0.1)	362 (0.2)	265 (0.1)	495 (0.2)	36.7	86.8	280 (0.3)	279 (0.4)	174 (0.3)	324 (0.5)	16.1	86.2
	휴직	17,795 (5.5)	4,686 (2.0)	2,524 (1.2)	7,463 (2.6)	59.3	195.7	5,751 (5.6)	2,168 (3.4)	1,081 (2.2)	3,393 (5.3)	56.5	213.9
	채용장려금	78,952 (24.2)	41,783 (17.8)	20,878 (9.9)	16,766 (5.8)	-59.9	-19.7	52,854 (51.8)	27,456 (43.1)	13,316 (26.7)	10,457 (16.4)	-61.9	-21.5
	재고용장려금	268 (0.1)	437 (0.2)	309 (0.1)	198 (0.1)	-54.7	-35.9	517 (0.5)	838 (1.3)	585 (1.2)	375 (0.6)	-55.3	-35.9
	소 계	219,297 (67.3)	126,265 (53.8)	85,388 (40.6)	160,399 (55.5)	27.0	87.8	84,915 (83.3)	44,711 (70.2)	26,678 (53.5)	38,093 (60.0)	-14.8	42.8
고용 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103,371 (31.7)	104,517 (44.6)	121,194 (57.6)	124,310 (43.0)	18.9	2.6	14,910 (14.6)	16,333 (25.7)	20,422 (41.0)	22,091 (34.8)	35.3	8.2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1,225 (0.4)	1,388 (0.6)	1,779 (0.8)	1,937 (0.7)	39.6	8.9	821 (0.8)	1,021 (1.6)	1,327 (2.7)	1,531 (2.4)	50.0	15.4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1,492 (0.5)	1,757 (0.7)	1,739 (0.8)	746 (0.3)	-57.5	-57.1	1,052 (1.0)	1,236 (1.9)	1,247 (2.5)	1,142 (1.8)	-7.6	-8.4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128 (0.1)	410 (0.2)	389 (0.2)	985 (0.3)	140.2	153.2	49 (0.0)	170 (0.3)	189 (0.4)	484 (1.9)	184.7	156.1
	중소기업인수 지원금	283 (0.1)	253 (0.1)	-	414 (0.1)	63.6	-	226 (0.2)	200 (0.3)	-	187 (0.3)	-6.5	-
	소 계	106,499 (32.7)	108,325 (46.2)	125,101 (59.4)	128,392 (44.5)	18.5	2.6	17,057 (16.7)	18,960 (29.8)	23,185 (46.5)	25,434 (40.0)	34.1	9.7

주 : 본 표의 실적치는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타기관에서 발표하는 실적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고용보험 DB.

다. 업종별 활용추이 및 실적

2001년 상반기의 업종별 고용안정사업 활용현황을 활용인원과 지급액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부표 32 참조), 제조업에 전체 활용인원의 51.8%, 지급금액의 45.9%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하반기에 제조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활용인원 측면에서 38.8%, 지급액 측면에서 37.4%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제조업 편중정도가 심화된 것이다.

업종별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대비 고용안

정사업 지급액 비율을 살펴보면(표 19 참조),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의 비율이 40.1%에 달해 가장 높은 지급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집중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그 다음으로는 광업(26.4%),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21.1%), 제조업(18.4%) 등의 순으로 지급액 비율이 높게 나왔다.

보다 정확하게 업종별로 고용안정세부사업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급액 분포를 보험료 분포와 비교한 상대적 활용정도를 파악하였다. 다음 <표 20>은 업종별 고용안정사업의 지급액 구성비를 보험료 구성비로 나눈 '상대적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안정사업 전체에 대한 상대적 활용도의 크기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광업,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등은 활용수준이 미미하였다. 특히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의 상대적 활용도는 268.9%로 타업종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 업종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고용안정사업의 세부사업별 상대적 활용도를 업종별로 보면 휴업수당지원금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과 광업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채용장려금의 경우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도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부동산 및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표 19> 업종별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추이(1998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전체	농수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소비자용 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업	기타 공공, 사회·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 업종
1998년 상반기	13.1	5.0	2.0	20.5	0.2	1.3	2.3	1.0	5.0	5.8	24.2	7.9	5.2	7.1	2.3
1998년 하반기	54.4	8.8	11.8	93.4	0.7	11.4	48.9	21.3	29.3	12.9	57.7	15.2	8.3	11.9	3.6
1999년 상반기	25.2	5.6	22.4	36.5	2.2	13.0	10.3	7.7	7.8	32.9	43.2	2.1	9.3	7.2	11.9
1999년 하반기	30.7	11.9	32.6	35.2	2.1	23.5	35.2	12.4	11.9	8.0	78.6	24.2	39.6	12.4	3.0
2000년 상반기	17.4	4.9	33.6	18.7	5.8	10.0	18.2	7.5	7.1	2.1	49.5	19.1	19.2	8.3	1.3
2000년 하반기	11.9	4.6	11.7	11.9	1.0	4.6	7.1	3.9	6.2	2.3	41.6	15.1	15.6	8.1	1.9
2001년 상반기	14.9	4.2	26.4	18.4	1.2	5.7	7.3	3.6	7.5	3.2	40.1	21.1	18.3	6.2	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고용보험 DB.

의 활용도가 타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는 금융·보험업에서의 활용도가 제

일 높았고, 직장보육시설지원금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한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에서 가장

<표 20> 업종별 고용안정사업 상대적 활용도(2001년 상반기)

(단위 : %)

	전 체	고 용 유 지 지 원 금							채용 장려금	
		휴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 훈련	사외파견	인력 재배치	유급휴직	무급휴직		
농수림업	27.9	10.4	0.0	0.0	0.0	0.0	121.8	0.0	15.5	
광업	177.2	297.3	0.0	0.0	0.0	0.0	740.1	1820.3	76.4	
제조업	123.2	233.1	266.9	260.6	172.6	254.4	104.5	166.6	74.9	
전기·가스·수도사업	8.1	1.1	0.0	0.0	0.0	0.0	0.0	0.0	12.5	
건설업	38.3	23.5	0.0	0.4	0.0	0.0	226.6	35.6	95.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9.0	17.7	0.0	0.0	0.0	0.0	57.6	14.2	187.9	
숙박·음식점업	24.4	14.2	0.0	0.0	1807.3	0.0	40.8	0.0	24.0	
운수·창고·통신업	50.2	9.4	0.0	18.9	0.0	0.0	12.5	0.0	35.1	
금융·보험업	21.5	0.0	0.0	0.0	0.0	0.0	0.4	0.0	36.8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68.9	28.0	4.6	11.7	72.6	40.0	115.5	237.3	249.7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141.3	87.6	0.0	0.0	0.0	23.2	53.0	0.0	99.9	
교육서비스업	123.0	25.5	0.0	0.0	0.0	0.0	376.2	0.0	181.8	
보건·사회복지사업	41.3	10.1	0.0	0.0	0.0	0.0	9.3	0.0	38.4	
기타 업종	14.2	0.0	0.0	0.0	0.0	0.0	1.3	0.0	11.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 시설지원 (보육교사)	재고용 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다수 고령자	고령자 재고용	신규 고령자	육아휴직 장려금	여성 재고용	실직여성 가장			
농수림업	48.5	0.0	6.6	0.0	0.0	0.0	1050.4	0.0	173.5	0.0
광업	143.3	0.0	59.1	0.0	0.0	0.0	0.0	0.0	207.5	0.0
제조업	46.8	152.0	26.9	23.1	89.9	86.3	94.0	138.0	70.0	70.0
전기·가스·수도사업	28.2	0.0	3.5	10.2	0.0	0.0	0.0	0.0	0.0	0.0
건설업	4.3	0.0	11.4	2.0	47.0	22.6	6.3	44.3	52.1	52.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0.4	44.5	17.4	6.6	130.3	123.9	6.2	103.7	204.1	204.1
숙박·음식점업	28.9	154.7	26.3	28.7	87.5	393.2	0.0	70.2	131.0	131.0
운수·창고·통신업	149.3	140.4	51.7	191.4	58.5	34.5	20.1	26.9	38.5	38.5
금융·보험업	1.1	0.0	0.7	823.7	39.9	8.2	22.7	40.4	7.8	7.8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522.9	166.1	675.8	19.8	92.5	152.5	48.3	104.2	260.5	260.5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204.5	162.1	138.4	37.8	0.0	44.2	193.3	73.5	191.0	191.0
교육서비스업	53.2	212.9	82.6	0.0	1690.7	1185.7	1369.3	724.4	568.8	568.8
보건·사회복지사업	27.3	0.0	21.0	142.4	283.5	269.7	1004.5	96.6	20.1	20.1
기타 업종	37.6	0.0	14.8	122.9	0.0	0.0	52.1	0.0	0.0	0.0

주 : 1) 업종별 상대적 활용도=(업종별 지급액의 구성비÷업종별 납부 보험료의 구성비)×100.

2) 상대적 활용도의 수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 수치가 작은 것에 비해 고용안정사업의 활용이 활발했음을 의미함.
자료 : 고용보험 DB.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라. 사업장 규모별 활용추이 및 실적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고용안정사업 부문 대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비율을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21 참조), 10~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지급액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고, 5~9인 규모와 30~99인 규모의 사업장이 24.1%,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20.1%의 비율을 나타냈다.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고용안정사업 부문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액의 비율은 시기별로 큰 변동을 보였다. 1998년 하반기의 경우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999년 하반기

와 2000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용장려금의 적극 활용으로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의 지급액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1년 상반기의 경우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특정 사업장 규모에 편중됨이 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고용보험 3사업 중 고용안정사업 가입사업장 중에 실제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한 사업장의 비율인 고용안정사업 참여도를 사업장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22 참조),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17.3%로 가장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참여도가 0.9%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고용안정사업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 활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급액 구성비를 보험료 구성비로 나눈 상대적 활용도를 보면(표 23 참

〈표 21〉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추이(1998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전 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건설공사
1998년 상반기	13.1	1.2	0.8	5.4	11.0	13.8	15.8	13.5	13.8	0.3
하반기	54.4	1.1	13.4	24.1	42.3	58.4	67.1	50.8	70.7	0.3
1999년 상반기	25.2	20.6	25.8	27.8	32.2	20.2	19.2	14.1	30.2	0.1
하반기	30.7	122.4	62.8	41.0	30.7	17.5	12.4	6.8	18.3	0.7
2000년 상반기	17.4	58.8	34.4	28.0	18.5	11.5	10.2	5.3	6.3	0.5
하반기	11.9	21.9	22.3	20.4	16.4	10.6	9.8	4.3	4.3	0.2
2001년 상반기	14.9	20.1	24.1	25.6	24.1	13.5	14.5	7.5	5.3	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고용보험 DB.

고용보험동향

〈표 22〉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참여도(2001년 상반기)

(단위 : 개, %)

	전 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건설공사
가입사업장(A)	724,169	480,932	99,768	69,410	25,261	7,452	1,249	944	880	38,273
활용사업장(B)	17,551	4,444	3,943	5,062	2,653	966	176	150	152	5
참여도(B/A)	2.4	0.9	4.0	7.3	10.5	13.0	14.1	15.9	17.3	0.0

자료 : 고용보험 DB.

〈표 23〉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상대적 활용도(2001년 상반기)

(단위 : %)

	전 체	고용유지지원금							채용 장려금
		휴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 훈련	사외파견	인력 재배치	유급휴직	무급휴직	
5인미만	134.9	50.5	4.9	0.0	0.0	89.6	106.7	6.2	455.0
5~9인	161.7	115.5	0.0	2.3	0.0	9.7	260.1	27.1	255.2
10~29인	172.1	181.5	163.5	3.6	67.8	192.8	256.4	223.2	142.2
30~99인	161.5	224.1	95.3	26.1	665.3	482.6	178.2	301.6	78.3
100~299인	90.5	130.5	489.2	45.4	0.0	0.0	57.0	202.7	22.8
300~499인	97.5	145.0	0.0	347.9	0.0	0.0	58.2	0.0	2.4
500~999인	50.1	57.2	0.0	78.6	0.0	0.0	15.5	17.6	4.5
1,000인이상	35.6	11.3	0.0	235.8	0.0	0.0	9.9	0.0	9.4
건설공사	0.4	0.0	0.0	0.0	0.0	0.0	0.0	0.0	0.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 시설지원 (보육교사)	재고용 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다수 고령자	고령자 재고용	신규 고령자	육아휴직 장려금	여성 재고용	실직여성 가장			
5인미만	27.5	83.4	140.3	12.7	382.8	579.5	54.4	312.7	485.1
5~9인	108.8	206.9	262.6	8.4	245.1	209.7	147.0	252.5	246.1
10~29인	172.7	340.2	224.3	3.3	211.4	102.6	157.0	137.3	150.9
30~99인	187.0	168.0	184.3	4.3	84.2	62.1	31.3	69.6	80.5
100~299인	150.1	69.1	68.4	20.3	38.9	22.4	131.9	15.7	12.6
300~499인	111.3	52.1	28.0	21.8	0.0	0.0	144.8	0.0	0.0
500~999인	94.6	0.0	28.7	50.1	0.0	0.0	169.1	125.4	6.5
1,000인이상	32.4	0.0	4.4	335.1	0.0	0.2	80.3	43.7	0.0
건설공사	0.1	0.0	1.9	0.0	0.0	0.0	0.0	0.0	0.0

주 : 1) 사업장 규모별 상대적 활용도=(사업장 규모별 지급액의 구성비÷사업장 규모별 납부보험료의 구성비)×100.

2) 상대적 활용도의 수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이 수치가 작은 것에 비해 고용안정사업의 활용이 활발했음을 의미함.
 자료 : 고용보험 DB.

조), 10~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활용도가 172.1로 가장 높았고, 5~9인 규모 사업장에서 161.7, 30~99인 규모에서 161.5의 비교적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사업별로 보면 휴업수당지원금은 30~99인 사업장 규모에서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224.1), 10~29인, 300~499인 사업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직지원금의 활용은 유급휴직의 경우 5~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의 경우 30~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경우 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2000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채용장려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5~9인, 10~29인 규모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30~99인 규모 사업장의 활용도가 높았고,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5~9인 규모에서 높았다. 한편 1999년 하반기에 신설된 재고용장려금과 2001년 들어 수급요건과 지원방식이 변화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5인 미만 규모에서 활용실적이 높았다.

마. 지역별 활용추이

지역별로 고용안정사업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액의 비율을 살펴보면(표 24 참조), 2001년 상반기의 경우 대구·경북(22.2%), 대전·충청(20.7%), 부산·경남(20.6%) 지역에서 고용안정사업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었고, 서울·강원지역에서의 활용비율은 8.7%로 가장 낮았다.

바. 채용관련 장려금제도 활용인원의 인적특성

2001년부터 고용안정사업 중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여자재고용장려금, 실직여자가장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제외한 채용과 관련된 장려금의 경우 그 활용인원에 관한

〈표 24〉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 추이(1997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전 체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1997년 하반기	7.1	9.1	6.6	6.0	5.1	4.4	6.3
1998년 상반기	13.1	6.8	23.6	11.2	16.7	21.0	13.9
하반기	54.4	29.6	77.2	68.5	70.7	75.7	70.9
1999년 상반기	25.2	18.8	40.4	27.7	24.8	28.3	27.9
하반기	30.7	21.7	41.7	41.8	32.0	41.8	34.8
2000년 상반기	17.4	11.2	23.0	22.2	19.2	27.5	22.2
하반기	11.9	7.8	17.7	17.9	12.3	17.0	13.0
2001년 상반기	14.9	8.7	20.6	22.2	18.8	16.7	20.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각호: 고용보험 DB.

인적 정보가 입력되어 인적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¹³⁾.

우선 각 장려금별 활용인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이 여자로 한정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하면, 대체로 남자가 69.5~78.7%, 여자가 21.3~30.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50세 이상의 활용비중이 전체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활용인원 중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고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연령별로 그다지 편중되어 있지 않다(표 25 참조). 다음으로 각 장려금별 활용인원의 직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그 비율이 71.9%에 달했다. 한편 사무직의 비중은 22.5%를 차지해 그 다음으로 높았다(표 26 참조).

〈표 25〉 채용관련 장려금 활용인원의 성별·연령별 특성(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전체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 체	22,494 (100.0)	15,628 (69.5)	6,866 (30.5)	13 (0.1)	615 (2.7)	2,432 (10.8)	3,154 (14.0)	1,260 (5.6)	6,290 (28.0)	8,723 (38.8)	
고용조정지원금	채용장려금	5,216 (100.0)	3,860 (74.0)	1,356 (26.0)	12 (0.2)	388 (7.4)	1,216 (23.3)	2,110 (40.5)	1,002 (19.2)	478 (9.2)	10 (0.2)
	재고용장려금	197 (100.0)	137 (69.5)	60 (30.5)	-	6 (3.0)	39 (19.8)	72 (36.5)	65 (33.0)	15 (7.6)	-
고 용 촉 진 장려금	고령자	신규고령자	14,403 (100.0)	11,328 (78.7)	3,075 (21.3)	-	-	-	-	5,684 (39.5)	8,712 (60.5)
		고령자 재고용	45 (100.0)	34 (75.6)	11 (24.4)	-	-	-	7 (15.6)	38 (84.4)	-
	여 성	육아휴직	1,467 (100.0)	-	1,467 (100.0)	-	51 (3.5)	824 (56.2)	592 (40.4)	-	-
		여성 재고용	89 (100.0)	-	89 (100.0)	-	5 (5.6)	56 (62.9)	26 (29.2)	2 (2.2)	-
		실직여성가장	251 (100.0)	-	251 (100.0)	-	3 (1.2)	19 (7.6)	118 (47.0)	97 (38.6)	14 (5.6)
	장 기 실업자	379 (100.0)	268 (70.7)	111 (29.3)	1 (0.3)	33 (8.7)	96 (25.3)	125 (33.0)	65 (17.2)	59 (15.6)	-
	고용촉진시설	447 (100.0)	1 (0.2)	446 (99.8)	-	129 (28.9)	182 (40.7)	111 (24.8)	22 (4.9)	2 (0.4)	1 (0.2)

주 :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각 특성별 수치가 전체 활용인원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고용보험 DB.

13) 본 분석에서는 2001년 상반기에 입력된 총 43,061건의 개인별 자료 중 2번 이상 장려금을 수급하여 중복가입된 자를 제외한 총 22,57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각 장려금별 개인정보는 연인원의 개념인 누적된 활용건수와는 다르다.

〈표 26〉 채용관련 장려금 활용인원의 직종별 특성(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전 체	고위 임직원 ·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 준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 시장 판매자	농·어 업숙련 근로자	기능원 · 관련 근로자	기계조 작원· 조립원	단순 노무직	
전 체		15,331 (100.0)	540 (3.5)	899 (5.9)	1,338 (8.7)	3,443 (22.5)	1,422 (9.3)	25 (0.2)	1,473 (9.6)	238 (1.6)	5,953 (38.8)	
고용조정지원금	채용장려금	5,216 (100.0)	369 (7.1)	576 (11.0)	890 (17.1)	1,800 (34.5)	309 (5.9)	2 (0.0)	651 (12.5)	130 (2.5)	489 (9.4)	
	재고용장려금	197 (100.0)	26 (13.2)	12 (6.1)	28 (14.2)	50 (25.4)	8 (4.1)	1 (0.5)	38 (19.3)	4 (2.0)	30 (15.2)	
고용 촉진 장려금	고령자	신규고령자	7,269 (100.0)	112 (1.5)	42 (0.6)	161 (2.2)	223 (3.1)	784 (10.8)	20 (0.3)	622 (8.6)	77 (1.1)	5,228 (71.9)
		고령자 재고용	45 (100.0)	4 (8.9)	2 (4.4)	1 (2.2)	2 (4.4)	3 (6.7)	1 (2.2)	8 (17.8)	4 (8.9)	20 (44.4)
	여 성	육아휴직	1,467 (100.0)	4 (0.3)	105 (7.2)	45 (3.1)	1006 (68.6)	244 (16.6)	-	34 (2.3)	9 (0.6)	20 (1.4)
		여성 재고용	89 (100.0)	-	2 (2.2)	18 (20.2)	51 (57.3)	7 (7.9)	-	7 (7.9)	-	4 (4.5)
		실직여성가장	251 (100.0)	4 (1.6)	10 (4.0)	16 (6.4)	81 (32.3)	28 (11.2)	-	36 (14.3)	3 (1.2)	73 (29.1)
	장 기 실업자	장기실업자	379 (100.0)	20 (5.3)	26 (6.9)	46 (12.1)	119 (31.4)	23 (6.1)	1 (0.3)	57 (15.0)	8 (2.1)	79 (20.8)
	고용촉 진시설	직장보육시설지원 (보육교사)	418 (100.0)	1 (0.2)	124 (29.7)	133 (31.8)	111 (26.6)	16 (3.8)	-	20 (4.8)	3 (0.7)	10 (2.4)

주 :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각 특성별 수치가 전체 활용인원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고용보험 DB.

3.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개요

2001년 상반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 실적은 다음 〈표 27〉과 같이 활용인원의 경

우 전반기보다 40만명이 증가한 11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 활용사업장¹⁴⁾·인원, 지급액이 모두 2000년 하반기에 비해 높아졌다. 특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14) 앞서 고용안정사업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활용사업장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활용건수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어느 사업장에서 일정기간내 동일범주(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구분)내 훈련을 두 번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이며, 몇 건을 활용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와 반대로 중복계산을 피하는 방법인데 이는 몇 개의 사업장이 활용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있다. 또한 유급휴가훈련과 근로자학자금대부는 전반기에 비해 활용인원이 50% 정도 증가하였다.

수강장려금은 전반기에 비해 활용인원(2000년 하반기 227명, 2001년 상반기 6,762명)과 지급액(2000년 하반기 약 5천만원, 2001년 상반기 약 6억 5천만원)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얼마만큼이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주 지원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을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업주 지원사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유급휴가훈련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 [그림 7]과 같이 전체 고용보험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사업장 중 2001년 상반기 동안 사업주 지원사업에의

참여율이 전체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40% 이상인 반면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30%를 밑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참여율이 10% 이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 정도만이 사업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고용보험 시행 이후 계속되어지는 현상이며,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규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나. 세부사업별 활용실적

1)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 27>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개, 명, 백만원, %)

	전 체	사업주 지원		피보험자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유급휴가 훈련	수강 장려금	근로자 학자금대부	실업자 재취직훈련
활용사업장	27,398 (100.0)	27,299 (99.6)	99 (0.4)	-	-	-
활용인원	1,108,722 (100.0)	785,421 (70.8)	5,657 (0.5)	6,762 (0.6)	12,940 (1.2)	297,942 (26.9)
지급액	170,717 (100.0)	78,416 (45.9)	5,648 (3.3)	653 (0.4)	26,119 (15.3)	59,881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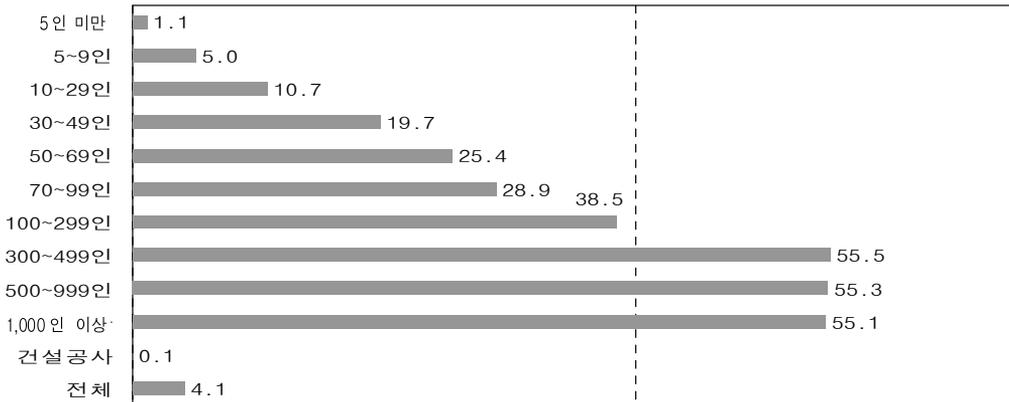
주 : 1) 활용인원수는 중복 계산된 건수개념임. 즉 어느 사업장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동일인을 대상으로 2번 훈련을 실시한 경우 활용인원수는 동일인이므로 1명으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훈련을 받은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고용보험 DB에 입력되지 않는 관계로 2명으로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한편 활용사업장수는 중복 계산된 것이 아님.

2)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고용보험 DB.

〔그림 7〕 사업장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주 지원사업 활용도(2001년 상반기)

(단위 : %)



- 주 : 1) 사업주 지원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유급휴가훈련을 말함.
 2) 활용도=(활용사업장수/2001년 6월 30일 현재 전체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사업장수)×100.
 3) 활용사업장수는 활용건수로 계산하지 않았음. 즉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임.
 4)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2001년 상반기 활용실적을 보면 다음 <표 28>과 같이 3만개 사업장에서 78만여명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 규모별로는 활용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61.8%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나, 활용인원 면에서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전체 활용사업장 중 1.9%의 비중을 보였으나, 활용인원은 전체의 59.6%를 차지하였다. 이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별로 보면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업종별 활용사업장 및 인원을 보면 모두 제조업에서 각각 33.3%와 4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활용인

원 면에서는 제조업 다음으로 금융·보험업(14.8%)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지역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2000년 하반기와 유사한 추세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과정·방법·기준별로 구분하여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우선 훈련내용 및 대상과 자체훈련여부에 따른 훈련과정별로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향상훈련에 집중되어(96.4%, 2000년 하반기 96.2%) 있다. 향상훈련의 자체 및 위탁훈련 모두 전반기에 비해 활용건수

고용보험동향

〈표 28〉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성별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 개, 명, 천원, %)

	전 체	사 업 장 규 모 별					
		5인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활용사업장	27,299(100.0)	4,728(17.3)	4,837(17.7)	7,311(26.8)	2,849(10.4)	1,502(5.5)	1,395(5.1)
활용인원	785,235(100.0)	10,814(1.4)	10,452(1.3)	19,787(2.5)	12,625(1.6)	9,707(1.2)	10,588(1.3)
지급액	78,271,344(100.0)	1,712,566(2.2)	1,648,289(2.1)	2,890,002(3.7)	1,697,628(2.2)	1,232,852(1.6)	1,415,802(1.8)
사 업 장 규 모 별				업 종 별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건설공사	농수림어업	광업	제조업
2,896(10.6)	703(2.6)	535(2.0)	520(1.9)	21(0.1)	107(0.4)	45(0.2)	9,088(33.3)
130,516(16.6)	44,276(5.6)	67,639(8.6)	468,037(59.6)	791(0.1)	1,384(0.2)	144(0.0)	378,434(48.2)
11,601,490(14.8)	5,106,900(6.5)	7,969,016(10.2)	42,900,788(54.8)	95,759(0.1)	97,762(0.1)	23,258(0.0)	34,587,799(44.2)
업 종 별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103(0.4)	3,481(12.8)	2,869(10.5)	202(0.7)	1,134(4.2)	1,879(6.9)	5,757(21.1)	616(2.3)
9,456(1.2)	32,371(4.1)	30,101(3.8)	6,710(0.9)	109,541(14.0)	139,142(17.7)	47,112(6.0)	1,480(0.2)
1,485,185(1.9)	5,476,082(7.0)	3,905,730(5.0)	635,595(0.8)	8,609,121(11.0)	13,706,861(17.5)	6,520,188(8.3)	191,897(0.2)
업 종 별				지 역 별			
보건·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	서울	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1,087(4.0)	753(2.8)	175(0.6)	8,636(31.6)	584(2.1)	3,885(14.2)	2,901(10.6)	6,288(23.0)
13,822(1.8)	6,819(0.9)	8,707(1.1)	306,336(39.0)	5,881(0.7)	82,190(10.5)	75,715(9.6)	167,732(21.4)
1,424,828(1.8)	865,236(1.1)	740,471(0.9)	36,021,684(46.0)	666,630(0.9)	10,324,384(13.2)	7,255,706(9.3)	11,200,798(14.3)
지 역 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별				
광주·전라	대전·충청	제주	10%	30%	50%	70%	
2,306(8.4)	2,517(9.2)	180(0.7)	22,295(81.7)	1,777(6.5)	1,468(5.4)	1,655(6.1)	
44,689(5.7)	101,372(12.9)	1,317(0.2)	67,023(8.5)	42,014(5.4)	69,622(8.9)	606,179(77.2)	
4,601,834(5.9)	8,040,669(10.3)	159,386(0.2)	9,866,434(12.6)	5,071,748(6.5)	8,146,412(10.4)	55,134,833(70.4)	

주 : 1) 활용사업장수는 활용건수가 아님. 즉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 휴가훈련 포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임. 그러나 활용피보험자의 경우 고용보험 DB내 훈련을 실시한 개인의 정보가 없는 관계로 한 사람이 몇 번 훈련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없음. 그러므로 활용피보험자의 수치는 동일인이 중복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2)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각 특성별 수치가 전체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3)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가 줄어들었지만 활용인원은 늘어났다. 전직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1건 이었으며,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전반 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렇듯 전직훈련이

타훈련보다 상대적으로 활용이 적은 것은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직예정 근로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직지원체계가 갖춰 있지 않으며,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과소평

〈표 29〉 훈련과정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건, 명, 천원, %)

		활용사업장	활용인원	지급액
전 체		28,101 (100.0)	785,235 (100.0)	78,271,344 (100.0)
양성	자체	45 (0.2)	8,484 (1.1)	6,317,434 (8.1)
	위탁	41 (0.1)	216 (0.0)	94,689 (0.1)
향상	자체	907 (3.2)	416,406 (53.0)	27,005,871 (34.5)
	위탁	27,098 (96.4)	360,083 (45.9)	44,848,521 (57.3)
전직	자체	1 (0.0)	5 (0.0)	373 (0.0)
	위탁	9 (0.0)	41 (0.0)	4,455 (0.0)

주 : 1) 위의 내용에서 훈련과정별 활용사업장수 중 '전체 수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이며, 개별적인 수치는 중복 계산된 것이 아님. 즉 '전체 수치'는 어느 사업장이나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하거나 받은 경우 동일사업장이나 개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3)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가하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문화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훈련방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0〉과 같이 전체 활용실적에서 집체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활용건수는 92.2%, 활용인원은 7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0년 하반기와 유사한 추세이나 그 수치는 다소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의 경우 활용건수와 활용인원 모두 그 규모 및 전체 활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보·통

〈표 30〉 훈련방법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건, 명, 천원, %)

	활용사업장	활용인원	지급액
전 체	28,762 (100.0)	785,235 (100.0)	78,271,344 (100.0)
집체훈련	26,530 (92.2)	624,210 (79.5)	65,926,759 (84.2)
현장훈련	58 (0.2)	801 (0.1)	165,981 (0.2)
통신훈련	2,174 (7.6)	160,224 (20.4)	1,217,860 (15.6)

주 : 1) 위의 내용에서 훈련방법별 활용사업장수 중 '전체 수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이며, 개별적인 수치는 중복 계산된 것이 아님. 즉 '전체 수치'는 어느 사업장이나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하거나 받은 경우 동일사업장이나 개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3)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신매체의 발달과 이를 통한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변화로 미루어 보았을 때 활용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훈련기관내 교과과정 및 시설·장비, 교사 등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훈련기준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실적은 다음 <표 31>과 같다. 그 결과는 기준외훈련이 전체 활용실적 중 99.7%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¹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직종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 <표 32>와 같이 활용건수와 활용인원 모두 사무관리분야의 훈련이 전체 활용실적에서 각각 41.1%, 62.2%로 가장 많이 훈련을 받은 분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분야의 훈련이 활용건

수와 활용인원이 각각 22.8%, 11.7%로 많았다.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직종의 경우는 활용건수나 활용인원이 전체 활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 하반기와 유사한 것이다.

2) 유급휴가훈련

2001년 상반기 유급휴가훈련의 활용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99개의 사업장에서 5천명 정도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인원은 전반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활용실적이 낮은 사업이라 하겠다.

유급휴가훈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 규모별로는 활용건수와 활용인원

<표 31> 훈련기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 건, 명, 천원, %)

	활용사업장	활용인원	지급액
전 체	27,364 (100.0)	785,235 (100.0)	78,271,344 (100.0)
기준훈련	93 (0.3)	4,103 (0.5)	2,679,933 (3.4)
기준외훈련	27,271 (99.7)	781,132 (99.5)	75,590,411 (96.6)

주 : 1) 위의 내용에서 훈련기준별 활용사업장수 중 '전체 수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이며, 개별적인 수치는 중복 계산된 것이 아님. 즉 '전체 수치'는 어느 사업장이나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하거나 받은 경우 동일사업장이나 개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1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훈련기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의하고 있다.

〈표 32〉 훈련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건, 명, 천원, %)

	활용사업장	활용인원	지급액
전 체	36,366 (100.0)	785,235 (100.0)	78,271,344 (100.0)
농림·어업·광업	672 (1.8)	13,520 (1.7)	1,117,690 (1.4)
섬유	94 (0.3)	239 (0.0)	31,549 (0.0)
화학제품·요업	806 (2.2)	3,447 (0.4)	749,107 (1.0)
금속	225 (0.6)	1,183 (0.2)	365,299 (0.5)
기계·장비	1,542 (4.2)	24,555 (3.1)	4,917,687 (6.3)
건설	3,129 (8.6)	21,637 (2.8)	3,978,181 (5.1)
전기	2,025 (5.6)	9,985 (1.3)	1,950,938 (2.5)
전자	680 (1.9)	5,686 (0.7)	1,274,680 (1.6)
정보·통신	8,308 (22.8)	92,126 (11.7)	10,663,074 (13.6)
운송장비	101 (0.3)	2,904 (0.4)	519,537 (0.7)
산업응용	937 (2.6)	2,108 (0.3)	367,712 (0.5)
공예	77 (0.2)	405 (0.1)	99,960 (0.1)
서비스	1,011 (2.8)	7,618 (1.0)	1,054,076 (1.3)
사무관리	14,941 (41.1)	488,372 (62.2)	42,621,798 (54.5)
금융·보험	1,491 (4.1)	71,370 (9.1)	7,208,493 (9.2)
의료	96 (0.3)	1,110 (0.1)	164,505 (0.2)
환경	164 (0.5)	586 (0.1)	74,091 (0.1)

주: 1) 위의 내용에서 훈련직종별 활용사업장수 중 '전체 수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이며, 개별적인 수치는 중복 계산된 것이 아님. 즉 '전체 수치'는 어느 사업장이나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하거나 받은 경우 동일사업장이나 개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고용보험 DB.

모두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전체 활용실적 중 각각 52.2%, 97.1%를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급휴가훈련 자체의 특성상 사업장의 재정과 관련이 깊은 것에 의한 현상이라 하겠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별로 보면 사업장 규모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업종별의 경우 활용건수는 금융·보험업(46.5%), 제

조업(15.2%), 운수·창고·통신업(12.1%)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활용인원은 제조업(64.6%), 금융·보험업(2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 규모 및 업종별 활용실적 분포 측면에서 볼 때 2000년 하반기와 동일한 것이다. 지역별 활용실적을 보면 활용건수는 서울지역이, 활용인원은 대구·경북지역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유급휴가훈련의 훈련직종을 살펴

〈표 33〉 유급휴가훈련 특성별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 개, 명, 천원, %)

	전 체	사 업 장 규 모 별					
		5~9인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100~299인
활용사업장	99(0.4)	1(1.0)	3(3.0)	4(4.0)	4(4.0)	5(5.1)	12(12.1)
활용인원	5,658(0.7)	1(0.0)	3(0.1)	5(0.1)	10(0.2)	11(0.2)	28(0.5)
지급액	5,609,715(4.7)	750(0.0)	3,685(0.1)	7,682(0.1)	17,465(0.3)	97,829(1.7)	161,945(2.9)
사업장규모별		업 종 별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12(12.1)	6(6.1)	52(52.5)	15(15.2)	6(6.1)	3(3.0)	12(12.1)	46(46.5)
85(1.5)	23(0.4)	5,492(97.1)	3,655(64.6)	42(0.7)	78(1.4)	107(1.9)	1,637(28.9)
796,072(14.2)	212,577(3.8)	4,311,709(76.9)	803,380(14.3)	181,060(3.2)	348,058(6.2)	1,011,055(18.0)	2,767,445(49.3)
업 종 별			지 역 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11(11.1)	1(1.0)	4(4.0)	1(1.0)	44(44.4)	7(7.1)	4(4.0)	28(28.3)
131(2.3)	1(0.0)	4(0.1)	3(0.1)	1,555(27.5)	1,418(25.1)	2,280(40.3)	288(5.1)
483,921(8.6)	793(0.0)	4,664(0.1)	9,339(0.2)	2,807,433(50.0)	306,617(5.5)	283,308(5.1)	1,735,577(30.9)
지 역 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별				
광주·전라	대전·충청	제주	10%	30%	50%	70%	
7(7.1)	8(8.1)	1(1.0)	8(8.1)	2(2.0)	23(23.2)	66(66.7)	
59(1.0)	57(1.0)	1(0.0)	17(0.3)	4(0.1)	54(1.0)	5,583(98.7)	
85,240(1.5)	390,791(7.0)	750(0.0)	8,488(0.2)	17,575(0.3)	198,002(3.5)	5,385,650(96.0)	

주 : 1) 위의 내용에서 활용사업장수는 활용건수가 아님. 즉 어느 사업장에서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임. 그러나 활용피보험자의 경우 고용보험 DB내 훈련을 실시한 개인의 정보가 없는 관계로 한 사람이 몇 번 훈련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없음. 그러므로 활용피보험자의 수치는 동일인이 중복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2)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특성별 수치가 전체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3)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보면 다음 〈표 34〉와 같이 사무관리분야와 금융·보험분야가 전체 활용건수 중 각각 81.9%, 99.3%를 차지하고 있어 유급휴가훈련이 대부분 이 두 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3) 수강장려금

2001년 상반기 수강장려금의 전체적인 활용실적은 5,978명이 훈련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건수의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반기에 비해 무려 30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1월부터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2001년 상반기 활용인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35〉와 같이 성별로는 남자가 65.2%로 높았는데 2000년 하반기

<표 34> 훈련직종별 유급휴가훈련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건, 명, 천원, %)

	활용사업장	활용인원	지급액
전 체	111 (100.0)	5,658 (100.0)	5,609,715 (100.0)
농업·어업·광업	1 (0.9)	1 (0.0)	3,895 (0.1)
금속	1 (0.9)	1 (0.0)	1,714 (0.0)
기계·장비	1 (0.9)	5 (0.1)	15,440 (0.0)
건설	1 (0.9)	1 (0.0)	227 (0.0)
전자	1 (0.9)	2 (0.0)	60 (0.0)
정보·통신	10 (9.0)	25 (0.4)	57,403 (1.0)
서비스	4 (3.6)	4 (0.1)	4,791 (0.1)
사무관리	53 (47.7)	4,129 (73.0)	3,263,221 (58.2)
금융·보험	38 (34.2)	1,488 (26.3)	2,276,555 (40.6)
환경	1 (0.9)	2 (0.0)	306 (0.0)

주 : 1) 위의 내용에서 훈련직종별 활용사업장수 중 '전체 수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이며, 개별적인 수치는 중복 계산된 것이 아님. 즉 '전체 수치'는 어느 사업장이나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하거나 받은 경우 동일사업장이나 개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표 35> 수강장려금 특성별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명, 천원, %)

	전 체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활용인원	5,978(100.0)	3,896(65.2)	2,082(34.8)	70(1.2)	818(13.7)	1,187(19.9)	2,117(35.4)	1,158(19.4)	
지급액	652,164(100.0)	455,297(69.8)	196,867(30.2)	6,825(1.0)	76,663(11.8)	115,053(17.6)	202,111(31.0)	106,468(16.3)	
연 령 별		학 령 별							사업장규모별
50~59세	60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5인미만	
601(10.1)	27(0.5)	45(0.8)	284(4.8)	3,284(54.9)	1,212(20.3)	1,114(18.6)	39(0.7)	239(7.5)	
138,713(21.3)	6,332(1.0)	5,260(0.8)	38,339(5.9)	360,702(55.3)	118,161(18.1)	124,017(19.0)	5,687(0.9)	24,730(6.9)	
사 업 장 규 모 별									
5~9인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2,06(6.4)	488(15.2)	225(7.0)	177(5.5)	137(4.3)	620(19.4)	177(5.5)	372(11.6)	561(17.5)	
216,74(6.1)	48,221(13.5)	25,168(7.1)	19,613(5.5)	16,192(4.5)	60,815(17.1)	17,179(4.8)	44,438(12.5)	78,568(22.0)	
업 종 별									
농수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19(0.6)	1(0.0)	1,337(41.8)	44(1.4)	68(2.1)	193(6.0)	19(0.6)	262(8.2)	473(14.8)	
1,530(0.4)	165(0.0)	141,409(39.7)	4,770(1.3)	7,912(2.2)	18,913(5.3)	2,160(0.6)	28,432(8.0)	43,700(12.3)	
업 종 별				지 역 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	서울	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307(9.6)	46(1.4)	253(7.9)	110(3.4)	70(2.2)	548(17.1)	4(0.1)	404(12.6)	1,003(31.3)	
48,499(13.6)	4,065(1.1)	238,20(6.7)	24,905(7.0)	6,315(1.8)	79,867(22.4)	300(0.1)	38,390(10.8)	106,955(30.0)	
지 역 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별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10%	30%	50%	70%			
464(14.5)	81(2.5)	698(21.8)	1,579(49.3)	435(13.6)	346(10.8)	840(26.2)			
50,453(14.1)	17,872(5.0)	62,758(17.6)	166,567(46.7)	54,385(15.3)	33,713(9.5)	101,765(28.5)			

주 : 1) 위의 내용에서 활용인원수는 활용건수가 아님. 즉 어느 개인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이상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인원수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는 의미임.

2)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특성별 수치가 전체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3)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96.3%)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집단(96.3%)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20·30대 연령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3.3% 밖에 되지 않았던 전반기에 비해 20·30대의 비중이 55.3%로 크게 증가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54.9%), 전문대졸(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100~299인인 사업장에서 19.4%로 가장 많았으며,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41.8%로 가장 활용이 많았음을 보여주었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1년 상반기 수강장려금 활용인원들의 훈련직종을 살펴보면 다음 <표 36>과 같이 활용인원 분포가 사무관리분야(77.6%), 정보·통신분야(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특성상 수강장려금을 활용하기 용이한 사무직을 중심으로 훈련수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근로자학자금대부

근로자학자금대부는 2001년 상반기 1만 명 정도가 활용하였으며, 이들 활용인원의 분포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7>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59.3%)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의 연령집단에서 37.7%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4년제보다는 2년제(54.9%)의 경우가 많았으며, 야간에 학업을 수행한 경우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23.3%), 10~29인(14.6%)과 100~299인(14.5%)인 사업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사업장에서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가 33.6%,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35.6%로 타업종 및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실업자재취직훈련

2001년 상반기 동안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는 55,926명으로 전반기 대비 68.1%

<표 36> 훈련직종별 수강장려금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명, 천원, %)

	전체	농·어·광업	기계·장비	건설	전기	전자	정보·통신	산업응용	서비스	사무관리	금융·보험
활용인원	4,680 (100.0)	1 (0.0)	61 (1.3)	7 (0.1)	11 (0.2)	1 (0.0)	944 (20.2)	1 (0.0)	20 (0.4)	3,631 (77.6)	3 (0.1)
지급액	407,395 (100.0)	144 (0.0)	13,361 (3.3)	1,323 (0.3)	5,795 (1.4)	90 (0.0)	80,015 (19.6)	240 (0.1)	4,285 (1.1)	301,763 (74.1)	380 (0.1)

주 : 1) 위의 내용에서 활용인원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임. 즉 어느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일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표 37〉 근로자학자금대부 특성별 활용실적(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천원, %)

	전 체		성 별		연 령 별				학교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세이상	2년제
활용인원	11,117(100.0)		6589(59.3)	4528(40.7)	159(1.4)	3215(28.9)	4195(37.7)	3548(31.9)	6100(54.9)
지 급 액	22,567,112(100.0)		13375753(59.3)	9191359(40.7)	345415(1.5)	6661870(29.5)	8618214(38.2)	6941613(30.8)	11646529(51.6)
학교별	주·야간별		진 공 계 열 별				사업장규모별		
4년제	주간	야간	이공·자연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기타	5인미만	5~9인	
4638(41.7)	487(4.4)	10630(95.6)	6042(54.3)	4409(39.7)	368(3.3)	298(2.7)	1032(9.3)	967(8.7)	
10129385(44.9)	1061209(4.7)	21505903(95.3)	12660490(56.1)	8508165(37.7)	795625(3.5)	602832(2.7)	2111989(9.4)	1961751(8.7)	
사 업 장 규 모 별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건설공사	
1620(14.6)	775(7.0)	476(4.3)	495(4.5)	1609(14.5)	687(6.2)	808(7.3)	2593(23.3)	55(0.5)	
3247862(14.4)	1560213(6.9)	948754(4.2)	1004944(4.5)	3270462(14.5)	1420945(6.3)	1651243(7.3)	5285734(23.4)	103215(0.5)	
업 종 별									
농수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40(0.4)	11(0.1)	3730(33.6)	219(2.0)	907(8.2)	862(7.8)	265(2.4)	596(5.4)	949(8.5)	
75243(0.3)	16526(0.1)	7619674(33.8)	450392(2.0)	179945(8.0)	1774861(7.9)	510033(2.3)	1216130(5.4)	1917283(8.5)	
업 종 별				지 역 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기타업종	서울	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1891(17.0)	247(2.2)	742(6.7)	430(3.9)	228(2.1)	3955(35.6)	185(1.7)	2071(18.6)	996(9.0)	
3835230(17.0)	494143(2.2)	1528792(6.8)	893062(4.0)	436292(1.9)	8280079(36.7)	336583(1.5)	4015426(17.8)	1944538(8.6)	
지 역 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별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제주	10%	30%	50%	70%		
1973(17.7)	943(8.5)	898(8.1)	96(0.9)	5221(47.0)	793(7.1)	1290(11.6)	3680(33.1)		
4139882(18.3)	1893533(8.4)	1802362(8.0)	154709(0.7)	10598103(47.0)	1607307(7.1)	2656850(11.8)	7436757(33.0)		

주 : 1) 위의 내용에서 활용인원수는 활용건수가 아님. 즉 어느 개인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이상 훈련을 받았다 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인원수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는 의미임.

2)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특성별 수치가 전체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3)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참여자가 증가한 원인은 전반기에 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증가하였고 고용보험 재취득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2001년 상반기 동안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참가자 55,926명은 2001년 상반기 이전부터 훈련수강을 시작하여 2001년 상반기에 걸쳐 훈련받은 자를 포함

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2001년 1월부터 훈련수강을 시작한 참가자는 48,414명이었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2001년 상반기 동안의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살펴보았다. 우선 다음 〈표 38〉에서와 같이 2001년 상반기 동안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참가자를 보면 성별로는 2000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2001년 상반기

기 동안 상실자의 남녀 성비(64 대 36)와 비교하여 볼 때 여자의 참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자의 참여가 활발한 훈련이라 하겠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집단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20·30대의 비율이 전체 훈련 참가자 중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경우가 55.7%로 절반 이상을 보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자가 40.8%

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와 50세 이상 고령자의 피보험자격 재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당시 직장의 특성을 보면 업종에서는 제조업(36.5%)이, 사업장 규모의 경우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39.9%)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38〉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 특성별 분포(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전 체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48,414 (100.0)	21,753 (44.9)	26,660 (55.1)	1,047 (2.2)	10,263 (21.2)	19,485 (40.2)	11,861 (24.5)	3,993 (8.2)	1,588 (3.3)	177 (0.4)
학 령 별			이직당시 업종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농수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273 (0.6)	1,373 (2.8)	26,959 (55.7)	8,973 (18.5)	10,517 (21.7)	314 (0.6)	139 (0.3)	60 (0.1)	17,324 (36.5)	114 (0.2)
이 직 당 시 업 종 별									
건설업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사업	기타공공 사회·개인 서비스업	기타업종
3,638 (7.7)	5,804 (12.2)	1,042 (2.2)	2,702 (5.7)	3,149 (6.6)	8,346 (17.6)	1,457 (3.1)	1,809 (3.8)	1,512 (3.2)	383 (0.8)
이 직 당 시 사 업 장 규 모 별									
5인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69인	7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7,333 (15.4)	4,533 (9.5)	7,142 (15.0)	3,497 (7.4)	2,223 (4.7)	2,455 (5.2)	6,949 (14.6)	2,544 (5.4)	3,188 (6.7)	6,998 (14.7)
이직당시 사업장규모별	이 직 당 시 직 종 별								
건설공사	고위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시장 판매자등	농·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관련근로자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619 (1.3)	934 (2.0)	1,675 (3.5)	4,013 (8.5)	19,020 (40.1)	5,337 (11.2)	133 (0.3)	7,978 (16.8)	1,610 (3.4)	6,781 (14.3)

주 : 1) 위의 내용에서 활용인원수는 활용건수가 아님. 즉 어느 개인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이상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인원수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는 의미임.

2) 성별, 연령, 학력을 제외한 각 특성은 피보험자격 상실당시 기준임.

3) 분석과정 중 데이터의 누락으로 인하여 특성별 수치가 전체 수치고 상이할 수 있음.

4)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직종은 사무직이 40.1%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의 특성을 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자, 중장년층, 고학력 자들에 편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종별로 어떤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직종별로 참가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39>와 같이 나타났다. 우선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종 중에서는 2000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분야(40.8%)의 훈련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조리, 관광 및 숙박관

련 직종, 미용 등의 서비스분야(22.7%), 사무관리분야(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 이후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종별 성별 분포를 보면 여자의 훈련참여 비중이 높은 훈련은 섬유가공, 의복제조, 디자인 등의 섬유분야, 인쇄·출판, 디자인개발 등의 산업응용분야, 공예분야, 사무관리분야, 그리고 의료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역시 2000년 하반기와 유사한 추세이다. 훈련 직종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어·광업분야와 화학제품·요업분야, 금융·보험

<표 39> 실업자재취직훈련 훈련직종별 참가자 특성별 분포(2001년 상반기)

(단위: 건, %)

	전 체	성 별		연 령 별			학 력 별		
		남자	여자	30세미만	30·40대	50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 체	91,921 (100.0)	44.1 (100.0)	55.9 (100.0)	63.5 (100.0)	32.9 (100.0)	3.7 (100.0)	59.4 (100.0)	18.5 (100.0)	22.1 (100.0)
농·어·광업	33 (100.0)	97.0 (0.1)	3.0 (0.0)	9.1 (0.0)	33.3 (0.0)	57.6 (0.6)	78.8 (0.0)	-	21.2 (0.0)
섬유	1,740 (100.0)	19.1 (0.8)	80.9 (2.7)	59.3 (1.8)	36.2 (2.1)	4.5 (2.4)	64.0 (2.0)	18.5 (1.9)	17.5 (1.5)
화학제품·요업	302 (100.0)	81.8 (0.6)	18.2 (0.1)	34.8 (0.2)	50.3 (0.5)	14.9 (1.3)	68.9 (0.4)	11.3 (0.2)	19.9 (0.3)
금속	95 (100.0)	86.3 (0.2)	13.7 (0.0)	57.9 (0.1)	32.6 (0.1)	9.5 (0.3)	57.9 (0.1)	18.9 (0.1)	23.2 (0.1)
기계·장비	7,851 (100.0)	78.1 (15.1)	21.9 (3.3)	46.8 (6.3)	43.1 (11.2)	10.2 (23.8)	70.0 (10.1)	12.6 (5.8)	17.4 (6.7)
건설	1,374 (100.0)	57.4 (1.9)	42.6 (1.1)	52.3 (1.2)	35.0 (1.6)	12.7 (5.2)	64.4 (1.6)	18.1 (1.5)	17.5 (1.2)
전기	2,577 (100.0)	82.3 (5.2)	17.7 (0.9)	62.7 (2.8)	32.9 (2.8)	4.4 (3.4)	64.8 (3.1)	17.2 (2.6)	18.0 (2.3)
전자	1,800 (100.0)	70.1 (3.1)	29.9 (1.0)	54.4 (1.7)	41.8 (2.5)	3.8 (2.1)	63.2 (2.1)	15.7 (1.7)	21.1 (1.9)
정보·통신	37,506 (100.0)	48.7 (45.1)	51.3 (37.4)	71.9 (46.2)	26.6 (33.1)	1.4 (16.1)	50.8 (34.8)	21.8 (48.1)	27.4 (50.7)
산업응용	4,467 (100.0)	33.6 (3.7)	66.4 (5.8)	77.1 (5.9)	21.9 (3.2)	1.0 (1.3)	56.9 (4.7)	22.8 (6.0)	20.3 (4.5)
공예	295 (100.0)	28.8 (0.2)	71.2 (0.4)	68.1 (0.3)	26.4 (0.3)	5.4 (0.5)	60.7 (0.3)	13.9 (0.2)	25.4 (0.4)
서비스	20,654 (100.0)	24.4 (12.4)	75.6 (30.4)	57.5 (20.4)	39.1 (26.7)	3.4 (20.9)	67.2 (25.4)	15.8 (19.2)	17.0 (17.3)
사무관리	10,114 (100.0)	37.4 (9.3)	62.6 (12.3)	52.7 (9.1)	40.8 (13.7)	6.5 (19.6)	61.1 (11.3)	16.6 (9.9)	22.3 (11.1)
금융·보험	364 (100.0)	65.1 (0.6)	34.9 (0.2)	31.9 (0.2)	57.4 (0.7)	10.7 (1.2)	51.6 (0.3)	15.7 (0.3)	32.7 (0.6)
의료	2,563 (100.0)	18.1 (1.1)	81.9 (4.1)	84.9 (3.7)	13.9 (1.2)	1.2 (0.9)	74.8 (3.5)	15.6 (2.3)	9.7 (1.2)
환경	186 (100.0)	77.4 (0.4)	22.6 (0.1)	31.2 (0.1)	58.6 (0.4)	10.2 (0.6)	62.9 (0.2)	15.6 (0.2)	21.5 (0.2)

주: 1) 위의 내용에서 활용인원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임. 즉 어느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일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안의 수치는 전체 참가자수 대비 비중임.

3)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고용보험 DB.

분야, 그리고 환경분야를 제외하고는 30세 미만의 집단의 비중이 타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훈련직종별·학력별 분포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참가자 중 고졸의 경우가 절반 이상인 관계로 고졸 집단의 비중이 훈련직종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와 50세 이상은 정보·통신분야와 기계·장비분야에, 여자와 40세 미만의 경우는 정보·통신분야와 서비스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과는 무관하게 역시 정보·통신분야와 서비스분야에 훈련참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월부터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한 경우의 훈련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0>과 같이 훈련을 수료한 경우는 전체 9만건 중 5만건(61.7%)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중도탈락한 경우는 전체의 21.1%로 전반기(15.2%)에 비해 증가하였다.

한편 2001년 7월부터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여 훈련을 수료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훈련기간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1>과 같이 전체 평균은 4.8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기(3.9개월)에 비해 1개월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특성별로는 전체 평균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훈련직종 중 농·어·광업분야의 경우 1.3개월로 훈련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실업급여

가. 개 요

2001년 상반기의 구직급여 수급자수¹⁶⁾를 전국 실업자수로 나눈 구직급여 수급률은 12.0%로 나타나 전년동기 및 전반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이와 같은 수급률은 비교대상의 범위를 실

<표 40> 실업자재취직훈련 훈련수료 현황(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전 체	교육종	수료	중 도 탈 락						
			소계	취업	자격증 취득	훈련직종 부적합	출산 및 부상	폐강	기타
91,825 (100.0)	15,782 (17.2)	56,682 (61.7)	19,361 (21.1)	5,328 (27.5)	12 (0.1)	308 (1.6)	154 (0.8)	6 (0.0)	13,553 (70.0)

주 : 1) 위의 내용에서 인원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임. 즉 어느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일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16) 구직급여 수급자수에는 각 월에 순수하게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월의 구직급여 신청자나 다른 급여 또는 수당을 수급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 41〉 실업자재취직훈련 특성별 훈련기간(2001년 상반기)

(단위 : 개월, 건)

전 체	성 별		연 령 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4.8 (56,682)	4.7 (24,606)	4.8 (32,074)	5.1 (785)	5.0 (10,863)	4.8 (23,466)	4.7 (14,433)	4.5 (4,830)
연 령 별		학 령 별					
50~59세	60세이상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4.5 (2,059)	4.5 (246)	4.9 (331)	4.8 (1,480)	4.8 (31,201)	4.8 (10,616)	4.7 (12,662)	4.4 (391)
훈 령 직 종 별							
농·어·광업	섬유	화학제품· 요업	기계·장비	건설	전기	전자	정보·통신
1.3 (8)	4.6 (1,141)	4.7 (162)	6.0 (46)	4.4 (4,744)	4.7 (870)	4.8 (1,472)	4.2 (944)
훈 령 직 종 별							
산업응용	공예	서비스	사무관리	금융·보험	의료	환경	
5.4 (2,242)	4.9 (138)	4.9 (13,992)	4.6 (6,206)	3.0 (250)	4.3 (647)	2.2 (145)	

주 : 1) 위의 내용에서 인원수는 중복 계산된 활용건수임. 즉 어느 개인이 해당기간(2001년 상반기)내 두 번 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일인이지만 두 번 계산되었다는 의미임.

2)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DB내 기금결재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표 42〉 특성별 실업자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 추이(1996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

	전국실업자 대비	1년 미만 전직실업자 대비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 대비	1년 미만 전직 상용·임시근로자 대비
1996년 하반기	0.6	-	-	-
1997년 상반기	1.3	-	-	-
하반기	2.4	-	-	-
1998년 상반기	5.6	6.9	8.1	11.9
하반기	9.6	11.7	14.0	22.2
1999년 상반기	10.6	13.6	16.1	28.2
하반기	10.5	13.5	15.9	27.8
2000년 상반기	7.7	9.9	11.7	20.2
하반기	9.0	11.3	13.3	21.4
2001년 상반기	12.0	15.5	18.1	29.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업급여의 적용대상으로 좁혀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¹⁷⁾.

〈표 43〉에서는 주요국의 수급률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수급률이 2001년 상반기에 상당히 상승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2001년 상반기의 구직급여 수급률 추이를 월별로 보면 [그림 8]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 11·12월에 동절기를 맞아 건설업 일용직 등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다소 떨어졌다가 2001년 1월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2001년 2월에 최고치에 이른 후 3월부터 하락하였지만 구직급여 수급률은 실업률 하락 이후에도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률의 변동은 분모가 되는 실업자수의 변화와 분자가 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수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설명될 수 있다. 실업자수가 증가할 때 이보다 빨리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증가하거나, 실업자수가 감소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증가하면 구직급여 수급률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실업자수의 추이를 보면 2001년 2월에 약 107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여 6월에 12만여명으로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자수는 감소했지만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3월 이후에도 구직급여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면 실업자수가 감소함에도 구직급여

〈표 43〉 주요국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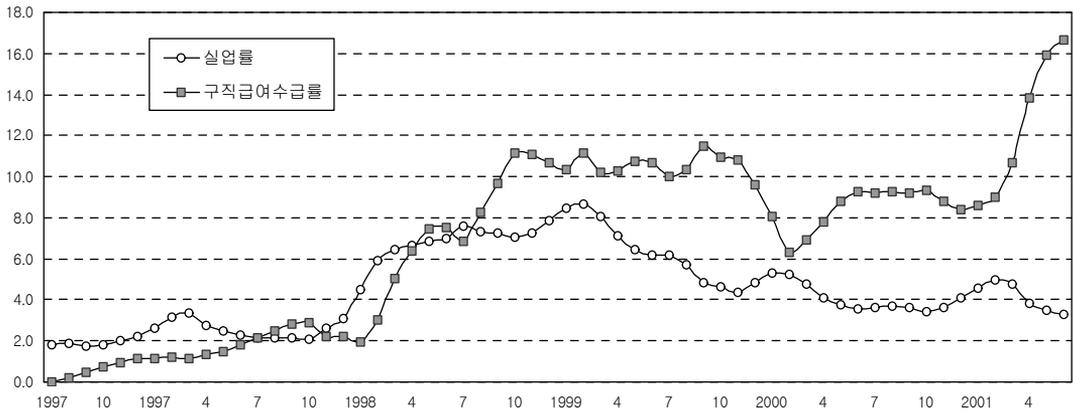
	실업자수	실업급여 수급자수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중
일본(1997)	-	-	39.0
독일(2000)	3,889	1,695	43.6
미국(2000)	5,655	2,110	37.3
영국(1993)	2,900	870	30.0

자료 : 독일·미국은 한국노동연구원·ILO·FES가 공동 주최한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워크숍」의 자료집(2001)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으며, 일본·영국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최한 「이직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완화방안에 대한 토론(2001)」의 자료에서 인용하였음.

17) 실업급여를 이직후 1년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고, 현행 고용보험법상 적용범위에 일용직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면 1년 미만 전직 상용·임시근로자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제도의 보호범위내에 있는 실업자 중 실제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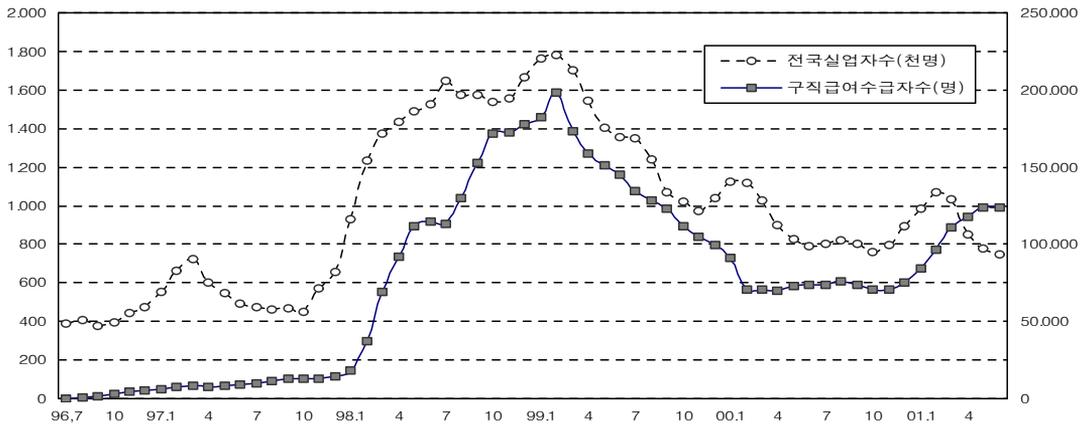
[그림 8] 월별 구직급여 수급률 추이(1996년 7월~2001년 6월)

(단위 :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그림 9] 실업자수와 구직급여 수급자수 추이(1996년 7월~200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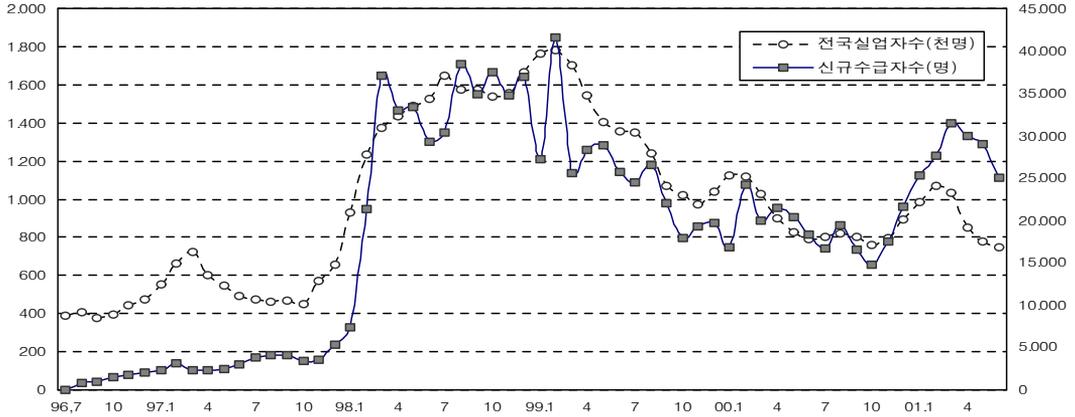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수급자수는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자.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새롭게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사람들이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누적된 숫자이며,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수의 변동을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 반영하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림

(그림 10) 실업자수와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 추이(1996년 7월~2001년 6월)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10]에서 보면 신규수급자수는 실업자수가 정점에 도달한 2월보다 한 달 뒤인 3월에 31,396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하고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수의 변동을 신규 수급자수 변동이 동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한 달 가량 시차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실업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바

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표 44>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직(실업발생) 후 구직급여 신청까지 40여일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업자수 증가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규 수급자수에 반영되고, 신규 수급자들의 누적된 숫자인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신규 수급자수

(표 44) 구직급여 신청소요기간 추이(1996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일, 명)

	실업급여신청 평균 소요기간	인 원
1996년 하반기	32.1	10,543
1997년 상반기	57.5	20,297
하반기	54.8	31,670
1998년 상반기	41.9	200,924
하반기	45.8	234,476
1999년 상반기	45.3	185,687
하반기	43.8	135,397
2000년 상반기	43.6	135,242
하반기	43.9	126,221
2001년 상반기	44.4	187,293

자료 : 고용보험 DB.

증가가 발생한 시점보다 더 뒤에 변화를 반영하게 되므로 실업자수는 감소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이후 얼마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수와 실업자수 변동의 시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해명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수를 증대시킨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1년 상반기의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657,107명으로 1999년 하반기의 702,501명에는 못미치지만 2000년 상반기, 하반기 각각 439,612명과 448,974명에 비해 각각 49.4%, 47.4% 증가한 수치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구직급여 신규 수급자수와 이들이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기간으로 분해될 수 있다. 먼저 수급기간부터 살펴보자. <표 45>는 경기가 상승세에 있었던 2000년 상반기 신규 수급자 중 소정급여일수 30일 연장이 이루어진 이후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수급기간을 요약하고 있

다. <표 46>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가 악화되는 2000년 10월, 11월 신규 수급자들의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평균 수급기간을 요약하고 있다. 2000년 10월, 11월의 신규 수급자들 중에는 새로이 등장한 피보험기간 5~10년차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피보험기간 3~5년차의 평균 수급기간은 다소 짧아졌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경기가 상승세에 있었던 2000년 상반기 신규 수급자 집단과 경기가 하락세에 있었던 2000년 10월, 11월 신규 수급자 집단의 평균 수급기간 비교를 통해 경기변동이 수급기간에 미친 영향을 보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대략적인 비교를 위해 피보험기간 3년 미만인 사람들의 평균 수급기간 증가분 만큼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의 평균 수급기간이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늘어났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경기침체는 대략 2.6일 정도 수급기간을 연장시킨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⁸⁾.

<표 45> 2000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로 2000년 상반기 신규 수급자의 연령별·피보험기간별 평균 수급기간
(단위: 일, 명)

	6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전 체
30세미만	72.1 (3,961)	74.2 (10,020)	101.4 (4,713)	80.6 (18,704)
30~49세	74.6 (6,389)	91.6 (19,967)	116.5 (20,144)	100.1 (46,516)
50세이상	78.0 (1,796)	121.0 (6,563)	152.2 (10,070)	133.9 (18,434)
전 체	74.3 (12,146)	92.1 (36,550)	124.8 (34,927)	103.2 (83,654)

주: 표 안의 수치 중 위는 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평균 수급기간, 아래는 인원수임.
자료: 고용보험 DB.

-
- 18) 이러한 한계말고도 올해 상반기와 전년동기를 비교해야 하겠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다만, 2000년 10, 11월 신규 수급자는 실업률이 올라갔던 2001년 초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의 수급기간 정보에 경기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 19)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거칠지만 대략적이거나 평균 수급기간 증가가 갖는 수급자 증대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으로의 유입(실업급여 신규 수급)과 유출(종료)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수급자수를 신규 수급자로 나누면 평균 수급기간을 얻을 수 있다. 2000년 상반기 평균 수급기간은 약 103.2일이므로 이를 개월수로 환산해서(103.2/30.4) 이 기간 평균 신규수급자수 20,213명과 곱하면 대략 월 68,618명 정도의 수급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적치인 74,829명과 다소 차이가 난다. 이 기간에 수급기간이 111일이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때 73,804명 정도의 수급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실적치와의 차이를 보정하면 80,484명이 된다. 이로부터 수급기간 8일의 증가효과는 대략 6,000여명의 수급자 증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다면, 이러한 수급자수의 증가는 구직급여 수급률을 7.7%에서 8.3%로 약 0.6% 증가시킬 뿐이다. 이론적 수치와 실적치 사이의 차이는 주로 수급자들의 수급행태에 원인이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신청후 14일의 대기기간후 최초 실업인정을 받고, 그 뒤로는 2주에 한 번씩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정급여일수에서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

〈표 46〉 2000년 10~11월 신규 수급자의 연령별·피보험기간별 평균 수급기간

(단위: 일, 명)

	6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전 체
30세이상	73.3 (769)	73.9 (1,921)	98.9 (825)	122.0 (312)	83.1 (3,836)
30~49세	76.9 (1,171)	95.8 (3,546)	113.8 (1,567)	136.9 (2,874)	109.3 (9,176)
50세이상	82.1 (268)	125.2 (1,213)	143.0 (484)	175.3 (1,515)	146.2 (3,482)
전 체	76.3 (2,208)	94.9 (6,680)	114.4 (2,876)	148.3 (4,701)	111.0 (16,465)

주 : 표 안의 수치 중 위는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평균 수급기간, 아래는 인원수임.

자료 : 고용보험 DB.

위의 전체하에서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평균 수급기간이 103.2일에서 111.0일로 증가한 것의 60~70% 정도는 피보험기간 5~10년인 이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에 포함된 결과로 판단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8일 정도 평균 수급기간이 증가

하였는데, 이 수치가 2001년 상반기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기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평균 수급기간의 증가가 구직급여 수급자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⁹⁾²⁰⁾.

이렇게 볼 때 올해의 구직급여 수급자수

증가는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평균 수급기간의 증가보다는 신규 수급자수의 증대에 크게 힘입고 있다. 신규 수급자수는 2001년 상반기에 168,280명으로 전년동기의 121,278명에 비해 38.8% 증가하였다.

이러한 신규 수급자수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림 11]에서는 구직급여를 신규로 수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속해 있는 구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비자발적 전직실업자수 추이²¹⁾와 신규 수급자수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1999년 이후로 구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비자발적 전직실업자 대비 신규 수급자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이임을 알 수 있다. 이 비중 수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이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추이를 보인다고 해서 제도의 연혁이 쌓이면서 신청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99년까지는 1998년 적용 확대의 여파로 실업자내에서 수급자 집단의 폭이 점점 넓어지던 시기였고, 2000년 경기 회복을 거쳐 2000년 말부터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

신규 수급자 증가의 원인을 보다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자 집단과 비교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는 월별 비자발적 피보험자격 상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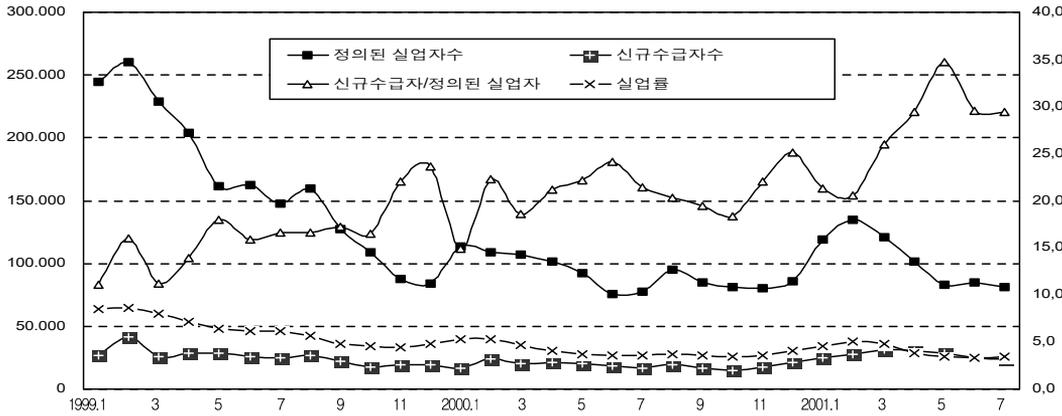
14일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급이 연기될 뿐이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이 한번 이상 실업인정을 거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수급하게 되면 한 달에 '두번'씩 받게 되고, 구직급여 수급자수 통계에서 이 사람은 그 달에 '한 명'의 수급자로 계산된다. 그러나 위의 행태로 인해 일부의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만 받고 그 달에 '한 명'의 수급자로 계산되어 구직급여 수급자수에 반영되게 된다. 또한 정상적으로 끊김 없이 수급하더라도 시작 또는 끝나는 달에는 '한번'만 받고 '한 명'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 실제 돈을 지급받은 실업인정일수만으로 계산한 위의 수치 대신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만 받고 한 명으로 계산된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최초 실업인정일부터 수급기간의 끝까지의 기간에 14일을 더해주면 위의 각 시기당 각각 126.9일과 132.4일을 얻을 수 있다. 이 수치들과 위의 수치 사이의 값이 구직급여 수급자수 실적치에 적절한 수급기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수치를 사용해도 결과는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실업인정일수의 누계를 분석을 위해 이용하였다.

20) 2001년 1월, 3월은 1998년 1월과 3월 실업급여사업 적용범위가 각각 10인 이상, 5인 이상으로 확대된 지 3년째 되는 때여서 피보험기간 3~5년차의 비중이 늘어나고(다음의 구직급여 수급자 특성편 참조) 이들로 인해 수급일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들에 의한 수급일수 증가효과는 확인되지 못했으나, 이들이 2001년 1월에 이직하고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했다더라도 90일을 넘기는 5월이 되어야 누적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약 40여일의 신청소요기간을 생각한다면 이들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효과는 7월은 되어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1년 상반기의 구직급여 수급률 추이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그림 11] 구직기간 3개월 이하인 비자발적 전직실업자수와 신규 수급자수 추이(1999년 1월~2001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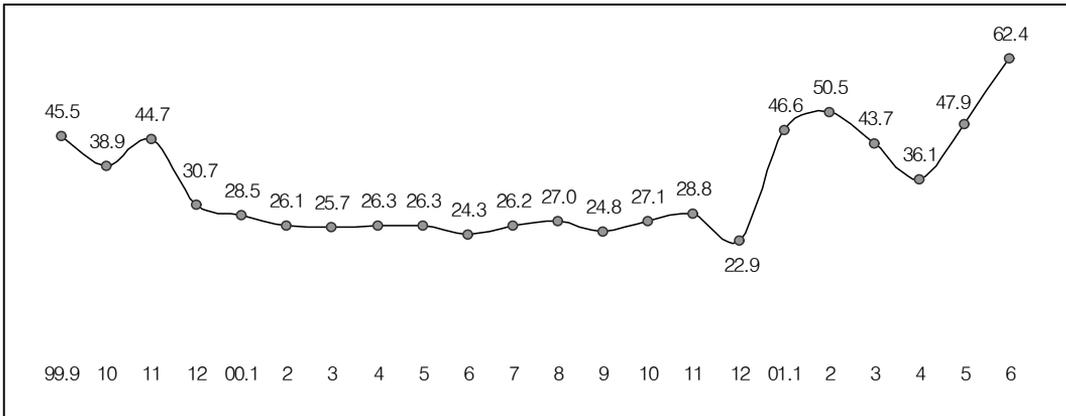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 고용보험 DB.

[그림 12] 월별 상실자 가운데 비자발적 상실자 중 실업급여 신청자 비중 추이(1999년 9월~2001년 6월)

(단위: %)



자료 : 고용보험 DB.

중 실업급여 신청자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가 불완전한 2001년 6월은 제

외하고 볼 때 경기가 좋았던 2000년을 전후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4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²⁾. 이렇게 볼 때 구직급여 신규 수급자수 증가는 제도의 연혁이 쌓이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보다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크게 늘어났고²³⁾, 이들 비자발적 이직자들이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수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2001년 상반기의 구직급여 수급률 상승에는 실업자수 증가가 시차를 두고 구직급여 수급자수에 반영되는 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크게 늘어 구직급여 신규 수급자수가 급증한 영향 등 경기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제도적인 요인인 피보험기간 5~10년차인 수급자 등장도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평균 수급기간을 늘려 구직급여 수급자수 증가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다²⁴⁾.

〈표 47〉과 〈표 48〉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워 수급한 사람

의 비중인 구직급여 소진율을 2000년 상반기 수급자와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직자로 2000년 11월까지 신규 수급한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직자부터 피보험기간 5~10년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존의 3~5년차의 피보험기간을 갖는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평균 소진율, 3~5년차의 평균 소진율을 다소 떨어뜨리는 결과를 유발했다. 또한 5~10년차인 집단의 평균 소진율도 전체 평균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실업급여 지급실적

2001년 상반기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3,974억원으로 2000년 상·하반기의 2,279억원, 2,429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표 49 참조). 실업급여의 수급인원도 681천명으로 2000년 상·하반기의 462천명, 456천명에 비해 모두 늘었다.

전년동기 및 전반기 대비로 수급액, 수급인원 모두 늘어난 것은 악화된 경기상황을

22) 1999년 8월 이전의 데이터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직사유 관리방법이 변화하였으므로 시계열 연결이 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23) 앞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분석」 편을 참조.

24) 이상의 요인들은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이 외에도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테면 구직급여 수급액 상한 상향조정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보험기간 5년 이상이 된 이직자나 1998년 1월과 3월의 적용확대로 올 상반기에 피보험기간이 3~5년이 된 이직자들은 수급기간 증대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성향이 증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들이 실제 영향을 미쳤는가 여부는 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에는 확인될 수 없다.

〈표 47〉 2000년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수급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구직급여 소진율

(단위 : %, 명)

	6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전 체
30세미만	62.2 (4,288) 6,890	64.5 (8,993) (13,952)	66.9 (4,209) (6,287)	64.5 (17,490) (27,129)
30~49세	64.6 (7,187) (11,132)	60.9 (17,003) (27,925)	60.9 (15,912) (26,141)	61.5 (40,102) (65,198)
50세이상	70.4 (2,302) (3,268)	67.5 (6,486) (9,612)	73.9 (11,630) (15,744)	71.3 (20,418) (28,624)
전 체	64.7 (13,777) (21,290)	63.1 (32,482) (51,489)	65.9 (31,751) (48,172)	64.5 (78,010) (120,951)

주 : 표 안의 수치 중 맨 위는 소진율, 가운데는 급여소진자수, 맨 아래는 수급자수임.
자료 : 고용보험 DB.

〈표 48〉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직자로 2000년 11월까지 신규 수급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구직급여 소진율

(단위 : %, 명)

	6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전 체
30세미만	61.8 (1,579) (2,556)	61.5 (4,385) (7,135)	58.5 (1,469) (2,511)	67.2 (709) (1,055)	61.4 (8,142) (13,257)
30~49세	68.0 (2,987) (4,394)	62.4 (8,960) (14,356)	54.2 (2,963) (5,471)	56.2 (4,719) (8,398)	60.2 (19,629) (32,619)
50세이상	78.6 (956) (1,217)	69.5 (3,415) (4,917)	65.5 (1,440) (2,200)	69.3 (3,553) (5,126)	69.6 (9,364) (13,460)
전 체	67.6 (5,522) (8,167)	63.5 (16,760) (26,408)	57.7 (5,872) (10,182)	61.6 (8,981) (14,579)	62.6 (37,135) (59,336)

주 : 표 안의 수치 중 맨 위는 소진율, 가운데는 급여소진자수, 맨 아래는 수급자수임.
자료 : 고용보험 DB.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2000년 하반기 이직자들부터 피보험기간 5~10년차 실업자가

등장하면서 피보험기간에 연동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는 구직급여의 특성상 지급

기간 및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²⁵⁾.

실업급여의 사업내용에 따른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구직급여가 3,694억원으로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9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조기재취직수당으로 262억원이 지출되었다.

다. 실업급여 수급자 특성

실업급여 수급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2.3%, 여자가 37.7%로 2001년 상반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남녀비율에 비해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참조). 이는 이직이 잦은 소규모 사

업장에 여자 피보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계층별 분포는 30대(32.0%)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40대가 23.7%, 20대가 20.5%, 50대가 17.6% 순이었다. 1999년 하반기 이후 40~49세, 50~59세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직사유별 분포는 권고사직이 59.5%로 전기보다 다소 상승하였고,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가 11.3%, 폐업·도산 및 공사중단이 9.9% 순이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6.3%로 1999년 상반기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자가 차지하

〈표 49〉 실업급여 지급추이(1999년 하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천원)

	1999년 하반기	2000년 상반기	2000년 하반기	2001년 상반기	2001. 1	2	3	4	5	6
전 체	717,344 (384,783,344)	462,254 (227,908,625)	456,206 (242,884,936)	681,433 (397,431,603)	86,914 (48,031,137)	99,255 (53,628,999)	114,422 (66,758,175)	122,107 (69,531,639)	129,584 (81,104,417)	129,151 (78,377,236)
구직급여	702,501 (373,511,006)	448,974 (217,009,028)	439,612 (226,536,176)	657,107 (369,437,651)	84,318 (45,333,219)	96,428 (50,601,347)	110,566 (62,354,557)	117,489 (64,126,223)	124,103 (74,550,664)	124,203 (72,471,641)
조기재취직 수당	11,991 (9,934,412)	10,850 (9,820,249)	13,862 (15,058,705)	20,604 (26,178,073)	2,103 (2,465,434)	2,265 (2,764,701)	3,233 (4,101,369)	3,988 (5,098,773)	4,750 (6,190,538)	4,265 (5,557,258)
상병급여	2,781 (1,330,026)	2,400 (1,075,004)	2,695 (1,286,181)	3,613 (1,788,120)	485 (231,200)	549 (261,638)	600 (288,295)	606 (302,834)	713 (360,570)	660 (343,583)
기타	50 (5,793)	24 (3,540)	29 (3,860)	109 (25,650)	8 (1,284)	13 (1,313)	23 (13,954)	24 (3,809)	18 (2,645)	23 (2,645)

주 : 표 안의 수치 중 위는 인원, ()안은 금액임.

자료 :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월.

25) 이들 집단의 소정급여일수 연장효과는 이직후 40여일 뒤 신청하고, 급여일수 연장은 대략 4개월쯤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2001년 상반기에 나타나게 된다.

〈표 50〉 구직급여 수급자 특성별 분포(2001년 상반기)

(단위 : 명, %)

전 체	성 별		연 령 별							학 령 별	
	남자	여자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초졸	중졸
169,106 (100.0)	105,420 (62.3)	63,682 (37.7)	24 (0.0)	4,887 (2.9)	29,799 (17.6)	54,112 (32.0)	40,035 (23.7)	29,781 (17.6)	10,468 (6.2)	9,035 (5.3)	16,837 (10.0)
학 령 별			지 역 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84,191 (49.8)	20,993 (12.4)	36,121 (21.4)	1,929 (1.1)	42,365 (25.1)	3,527 (2.1)	15,366 (9.1)	14,020 (8.3)	11,836 (7.0)	5,806 (3.4)	13,494 (8.0)	33,061 (19.6)
지 역 별						구 직 급여 일 액 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전	충북	충남	최저구직급여 여일액	~14,999원	15,000~ 19,999원	20,000~ 24,999원	25,000 ~29,999원
4,713 (2.8)	5,793 (3.4)	2,657 (1.6)	1,232 (0.7)	5,901 (3.5)	5,025 (3.0)	4,310 (2.5)	28,589 (16.9)	12,050 (7.1)	34,178 (20.2)	27,132 (16.0)	20,146 (11.9)
구직급여일액별			사 업 장 규 모 별								이직사유별
30,000~ 34,999원	35,000원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이상	건설공사	자발적 이직
26,593 (15.7)	20,406 (12.1)	25,381 (15.0)	20,221 (12.0)	31,178 (18.4)	28,544 (16.9)	20,690 (12.2)	7,115 (4.2)	8,546 (5.1)	22,419 (13.3)	4,995 (3.0)	8,517 (5.0)
이 직 사 유 별						업 종 별					
폐업·도산 공사중단	경영상 필요	휴업·체불 ·이전 등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농수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
16,784 (9.9)	10,700 (6.3)	7,908 (4.7)	100,587 (59.5)	5,557 (3.3)	19,052 (11.3)	1,009 (0.6)	899 (0.5)	60,734 (35.9)	398 (0.2)	20,300 (12.0)	16,692 (9.9)
업 종 별						직 종 별					
숙박 및 음식점	운수창고 및 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사업	공공국방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공공	기타업종	고위 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3,131 (1.9)	10,044 (5.9)	9,496 (5.6)	29,479 (17.4)	2,851 (1.7)	4,362 (2.6)	4,696 (2.8)	5,001 (3.0)	10 (0.0)	9,307 (5.5)	8,171 (4.8)	16,168 (9.6)
직 종 별						근 속 기 간 별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농어업 숙련	기능원	조직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	6월미만	6월 이상 ~1년미만	1~2년	3~4년	5~9년	10년이상
56,347 (33.3)	10,785 (6.4)	1,304 (0.8)	32,220 (19.1)	4,856 (2.9)	29,948 (17.7)	12,113 (7.2)	38,632 (22.8)	53,827 (31.8)	20,025 (11.8)	22,625 (13.4)	21,875 (12.9)

자료 : 고용보험 DB.

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은 5.0%로 전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구직급여일액별로 보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는 수급자의 비중이 전반기의 14.1%

에서 16.9%로 상승하였으나 1.5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은 전기의 26.6%에 비해 줄어든 24.0%로 나타났다. 반면 3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 비중은 전기의 22.5%에서 27.8%로 늘어났다. 비중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경기악화의 여파로 임금이 높

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²⁶⁾.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직한 수급자 비중이 전기의 8.8%에서 13.3%로 급속히 증가했다. 반면 1998년 세 차례에 걸친 적용확대 이후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직한 수급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이번 기에 들어 처음으로 이들의 비중이 전기의 47.9%에서 45.4%로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이전 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35.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7.4%), 건설업(12.0%) 순으로 수급자 비중이 높았다. 직종별로도 이전 기처럼 사무직원(33.3%), 단순노무직(17.7%),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19.1%)의 순이었다.

1998년 1월과 3월에 실업급여사업 적용범위가 각각 10인 이상,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과 3월 이후

5~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기간 3년 이상된 수급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을 반영하여 2001년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중 피보험기간 3년 이상인 자의 비중이 47.7%로 전기의 41.2%, 전년동기의 39.8%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51 참조).

라.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표 52〉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의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일액, 임금대체율을 요약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의 평균구직급여일액은 전반적으로 2000년 수급자에 비해 평균임금이 높았다는 영향 이외에도 2001년 이직자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조정된 영향으로 전년도 수급자보다 상승하였다. 구직급여일액 상한

〈표 51〉 피보험기간별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 추이(2000년 상반기~2001년 상반기)

(단위: 명, %)

	6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전 체
2000년 상반기	21,383 (17.6)	51,804 (42.6)	48,453 (39.8)	-	121,640 (100.0)
하반기	16,366 (14.3)	50,971 (44.5)	22,682 (19.8)	24,558 (21.4)	114,577 (100.0)
2001년 상반기	23,970 (14.2)	64,307 (38.1)	30,473 (18.0)	50,130 (29.7)	168,880 (100.0)

자료 : 고용보험 DB.

26) 이를테면 대우자동차에서 3,000여명, 동아건설에서 800여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올 상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표 5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1999년~2001년 상반기)

(단위 : 원, %)

	평균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일액	실업급여수급자수	임금대체율
1996년	25,446	-	16,649	-
1997년	24,945	57,808	88,548	43.2
1998년	24,396	56,061	421,725	43.5
1999년	21,611	48,179	267,891	44.9
1999년 상반기 이직자	22,885	51,312	150,676	44.6
1999년 하반기 이직자	19,972	44,151	117,215	45.2
2000년	21,129	48,627	256,531	43.5
2001년 상반기	23,398	51,344	123,080	45.6

주 : 1) 1999년 6월 30일 이전 이직자까지는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35,000원이었고,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말 이직자는 30,000원, 2001년 이직자부터 다시 35,000원으로 조정되었음.

2) 위의 내용은 당해 연도 이직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표 53〉 전직사업장 규모별 평균구직급여일액 및 평균임금일액 추이(1996년~2001년 상반기)

(단위 : 원, 명)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건설 공사	전체
1996년	구직급여일액	17,019	22,947	22,678	21,059	23,526	27,190	29,853	32,002	18,696	25,446
	평균임금일액 인원	- (91)	- (233)	- (1,113)	- (4,361)	- (4,031)	- (1,461)	- (2,241)	- (2,976)	- (94)	- (16,601)
1997년	구직급여일액	22,657	22,504	21,878	22,469	23,522	26,929	28,639	31,077	23,117	24,943
	평균임금일액 인원	47,131 (924)	47,904 (1,310)	46,992 (6,349)	48,393 (29,539)	52,493 (20,607)	65,044 (6,445)	69,254 (8,011)	82,499 (14,133)	50,368 (1,079)	57,809 (88,397)
1998년	구직급여일액	19,630	19,696	20,732	21,621	22,961	26,039	27,132	29,969	21,430	24,400
	평균임금일액 인원	40,240 (4,790)	40,567 (14,418)	43,558 (56,076)	46,747 (106,322)	50,845 (71,317)	61,199 (27,336)	63,694 (35,607)	75,859 (101,274)	43,917 (3,902)	56,078 (421,042)
1999년	구직급여일액	16,775	18,818	20,008	20,968	22,997	25,800	25,497	26,798	21,544	21,634
	평균임금일액 인원	33,871 (31,236)	38,738 (26,133)	42,152 (49,864)	45,791 (51,358)	53,054 (38,350)	63,669 (14,418)	61,535 (14,434)	64,862 (33,523)	44,398 (7,252)	48,247 (266,568)
1999년 상반기	구직급여일액	16,965	18,977	20,347	21,568	24,461	27,661	27,149	28,699	21,276	22,911
	평균임금일액 인원	34,139 (13,615)	38,871 (13,277)	42,714 (27,442)	46,976 (29,865)	56,856 (22,468)	68,909 (9,787)	64,732 (9,080)	68,363 (22,077)	43,242 (2,425)	51,386 (150,036)
1999년 하반기	구직급여일액	16,628	18,654	19,593	20,135	20,925	21,866	22,696	23,132	21,679	19,989
	평균임금일액 인원	33,663 (17,621)	38,601 (12,856)	41,465 (22,422)	44,143 (21,493)	47,675 (15,882)	52,594 (4,631)	56,114 (5,354)	58,111 (11,446)	44,979 (4,827)	44,206 (116,532)
2000년	구직급여일액	18,191	19,943	20,552	20,922	21,791	23,200	23,057	24,855	22,543	21,129
	평균임금일액 인원	36,933 (41,054)	41,632 (28,661)	43,837 (47,572)	46,385 (44,793)	51,517 (32,155)	59,983 (11,346)	57,826 (14,646)	72,211 (28,412)	48,610 (8,793)	48,626 (257,432)
2001년 상반기	구직급여일액	20,196	21,794	22,311	22,758	23,950	25,540	26,452	29,528	23,732	23,398
	평균임금일액 인원	40,532 (19,320)	44,807 (16,080)	46,368 (24,023)	48,617 (21,715)	53,371 (14,517)	60,682 (4,195)	62,899 (5,816)	75,516 (15,013)	48,884 (2,486)	51,343 (123,165)
A	구직급여일액	19,757	21,153	21,546	21,783	22,634	23,855	24,483	26,559	22,842	22,239

주 : 1) A는 2001년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3만원이라고 가정할 때의 구직급여일액.

2) 위의 내용은 당해 연도 이직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 고용보험 DB.

이 지난해와 같다는 가정하에 2001년 상반기 이직자의 평균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면 22,239원(표 53 참조)이 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천원 가량 상승한 수치인데, 이를 이용해 임금대체율을 계산하면 43.3%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된다. 이번 상반기의 임금대체율은 45.6%이므로 구직급여일액 상한 조정은 임금대체율을 약 2.3% 가량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Ⅲ.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내용

1. 고용안정사업

가. 개정배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을 통해서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피보험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재취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상향조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 이는 상시 구조조정시대에 현재의 고용조정 관행이 '감원'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의 재취업'에는 소홀하여 퇴직근로자는 심리적 불안과 실업극복의 어려움에, 재직근로자는 사기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의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본 호에서는 고용안정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1년 7월에 개정된 동 시행령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주요 개정내용

1)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

종전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신설하였다(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 제18조 신설).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지원장려금(영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려금 지급 ※ 전직지원서비스: 직업상담,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사무공간 제공 등 - 사업주는 노사합의를 거쳐 계획수립 및 실시 - 소요된 비용의 1/2~1/3 지원(12개월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재취업 촉진

용은 지원센터 시설 및 사무기기 임차료(시설관리비 포함), 지원·관리인력인건비, 상담·취업알선·창업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훈련비, 전문기관 위탁비용 등이다(2001. 7. 23. 노동부 고시 제2001-42호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 한편 개정된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소개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직지원계획서에는 고용조정 사유와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산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

정기준 및 인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가. 개정배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을 통해서 이루어진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률 개정은 훈련기관 및 훈련생이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수급하였을 경우 그들에 대한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어 이루어졌다.

나. 개정내용

1) 부정행위자 지급제한 강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와 고용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자 지원제한 등(영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지급 중지, 반환명령, 추가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자 지원제한 등(영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한 사업주 외에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하여도 지원금 지급중지, 반환명령, 추가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 대상자 명확화

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6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만 해당되던 법안이 사업주 외에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3. 실업급여

가. 개정배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

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업급여 관련 법률 개정은 직업소개 거부 등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그 사실에 대한 통지와 심사청구제도를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단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반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 사항들을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실업난 속의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를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체 등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유인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기존의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액·방식의 개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 급여지급 정지결정 통지(영 제57조) -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	□ 급여지급 정지결정 통지(영 제57조) - 지급정지 사유, 기간 등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통지	□ 통지내용의 구체화

나. 주요 개정내용

1) 급여지급 정지결정 통지의 구체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 제57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이를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 사유

·기간 등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 조기재취직수당 인상

개정된 조기재취직수당의 경우에는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조기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로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

여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즉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

사자)의 경우, 구인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구인하고자 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구인자에게 재취직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미지급일수)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input type="checkbox"/> 조기재취직수당(영 제62조) - 잔여구직급여액의 1/2을 지급	<input type="checkbox"/> 조기재취직수당(영 제62조) - 1월 이상 구직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잔여구직급여액의 전부를 지급	<input type="checkbox"/> 재취업 촉진

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가. 개정배경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 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성보호관련 고용보험법령 개정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2001. 8. 14. 법률 제6508호 제18조·19조)에 의해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일하는 여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업이 부담해온 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국가 재정과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충당함으로써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즉 출산 및 육아의 문제를 여자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현실화시켰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이다.

본 호에서는 모성보호급여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1년 8월의 법개정 내용과 10월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주요 개정내용

1) 육아휴직급여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출산휴가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의 유급보호휴가 부여 - 60일의 임금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일의 보호휴가 부여 - 60일에 대하여는 사업주 부담 - 30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2조 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8 신설
육아휴직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남자근로자 □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 금지 □ 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남녀근로자 □ (변동 없음)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 휴직 종료후 휴직전의 직위로 복귀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업주 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신설

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는 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용보험개정법률안 제55조의 2).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대상자를 현행 "여자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에서 모든 남녀근로자로 확대하고 현행 무급이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2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개정 시행령 제68조의 3). 아울러 육아휴직후의 복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직후 복직을 법제화하여 보장하도록 하였다. 급여기간은 산후 휴가 45일을 제외한 10.5개월이고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2) 산전후휴가급여 신설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자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토록 하였는데, 산전후 휴가종료일 이전에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법률안 제55조의 7).

이에 따라서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는 한편, 산후 휴가를 최소 45일 동안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휴가기간 급여는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급한다. 한편 그 늘어난 급여분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상한선은 135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개정 시행령 제68조의 8).